

GOVP1200515498

종
현
연구보고서

장미품종 로열티 권리화 대응방안 연구

An Analysis on Royalty Rights of Proprietary Rose Varieties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부

2016/05/30 14:52-운영지원과/허민자

제 출 문

농림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장미품종 로열티 권리화 대응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3년 10월 14일

주 관 연 구 기 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총괄연구책임자 : 김 수 석

연 구 원 : 박 현 태

연 구 원 : 박 주 영

위탁연구기관 : 세기국제특허사무소

위탁연구책임자 : 박 희 진

요 약 문

I. 제목

장미품종 로열티 권리화 대응방안 연구

I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WTO 무역협상에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이 다자간 무역협상의 대상이 됨으로써 지적재산권의 국제화가 크게 진전되었다. 여기서 작물종자의 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도 보호받게 되었고 개별국가들은 이를 위한 제도 정비와 실천적 이행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 우리나라는 1995년 「종자산업법」을 제정해 품종보호제도를 정비하였고, 2002년에는 품종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하게 되었다.

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 인정이 일반화됨에 따라, 기존에 품종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던 많은 생산자들이 품종개발자들로부터 지적재산권 관련 로열티를 요구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는 특히 장미품종에서 대표적 형태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장미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이 등록되기 시작하여 2003년 후반부터는 외국 품종들도 대거 등록될 예정으로 있어 장미품종의 로열티 문제는 장미재배농가의 주요 현안이 되어 있다.

본 연구는 장미품종과 관련된 로열티 문제를 전반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로열티 관련

현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나아가 장미 품종의 지적재산권, 특히 품종보호권의 권리화에서 파생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해 법률적, 정책적 검토를 함으로써 합리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내용

먼저 기존의 현안으로는 독일 코르데스사가 자사 품종의 상표권 침해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문제가 있는데, 이는 그 사이 상표가 무효된 ‘레드 산드라’와 ‘카디날’을 제외한 나머지 상표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품종보호권이 일반화되면 상표권을 이용한 로열티 청구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는 지적재산권 침해로 언제든지 민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미품종으로 현재 상표등록되어 있는 것은 코르데스사의 품종 32개이고, 다른 외국 육종회사의 품종은 상표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등록된 상표에 대한 권리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현안은 일본의 경성장미원예회사에 지급할 로열티 8억 8,000만원을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장미재배농가들(한장연)에게 용자형식으로 선납했으나 약 50% 정도만 회수하고 미수금이 발생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외견상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장연」 간의 단순 채권채무관계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정책실패가 동반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회수하지 못한 용자잔액에 대해 법적 조치에 의한 강제회수는 해당 농업인 및 관련 단체의 반발을 일으켜 사회적 이슈로 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될 때 책임소재에 대한 공방이 나타날 수 있다. 원래 용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 수출물류비 지원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남은 미수금을 수출물류비 지원에서 일괄 지원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라 판단된다.

세 번째 현안은 무단증식한 품종을 이용하여 생산한 절화장미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 2003년 6월부터 일본에서의 반입이 금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본 수출용 장미를 생산하는 농가는 품종보호권의 침해사유에 속하지 않도록 로열티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정책당국은 이러한 정보를 장미재배농가들에게 널리 알려서 사전에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앞으로 당면할 현안 부분인데, 여기에는 알려진 외국품종들의 품종보호권이 성립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과도기적 문제가 있다. 「종자산업법」에서는 과도기적 규정으로 이미 알려진 외국품종들이 품종보호권을 획득하게 되면 품종보호권은 품종보호출원일로 소급되어 그 권리가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장미의 경우 이미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 출원시효가 2002년 6월 30일까지로 대부분의 외국품종들이 2002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출원신청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외국의 알려진 품종들이 품종보호권을 획득하게 되면, 2002년도 상반기 출원신청 이후에 무단으로 식재한 품종에 대해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출원신청 이전에 이미 식재한 품종은 품종보호권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해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 주장에서는 품종보호출원일과 해당 품종의 식재일자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식재한 시점이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이면 기식재 품종은 품종보호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알려진 품종의 식재시점이 품종보호출원일 이후이면 무단으로 식재한 품종에 대해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장미재배농가들은 외국의 육종회사들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이 때 외국의 육종회사와 장미재배농가 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당국이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 원만한 협약을 위한 합리적 협정 내용으로 상정할 수 있는 안으로는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이후 기식재한 해당 품종 목본의 재배잔여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로열티 크기를 정하는 것이다. 통상 장미의 재배연수가 3.5~4년 정도이므로 식재한지 1년이 지난 것은 정상 로열티의 3/4 수준, 2년이 지난 것은 1/2 수준을 납부토록 하는 협정안이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협정안은 원칙적으로 생산자단체와 관련 육종회사 간에 합의되고 체결되어야 하지만, 생산자단체가 조직되어 있지 않거나 조직되어 있더라도 조직력이 미약해 사안

에 대해 공동대처할 수 없을 때는 정부가 이러한 타협안이 성립·가능하도록 중재할 필요가 있다.

품종보호권이 일반화되는 경우에 품종의 로열티 시장을 건전한 형태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로열티 수준을 적정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재 장미품종시장에서 거래되는 로열티는 품종별로 그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고 평균적으로 국제적 수준을 초과하고 있다. 그리고 로열티 지급에 상응하는 서비스가 부족한 편이다. 국내의 로열티 수준이 국제 수준보다 높은 것은 로열티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국내 생산자 단체의 교섭력이 약한 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로열티 수준을 적정화하고 로열티에 동반되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기 위해서는 생산자조직을 강화하여 이 조직이 대외 통상 및 교섭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시장정보를 소속 생산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생산자조직이 외국의 육종회사들과 품종과 관련된 전반적인 관계 개선을 도모하면서 적정한 로열티 수준과 로열티에 결부된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해 합의를 하고 이 결과를 생산자들에게 알리게 되면, 이는 로열티를 실질적으로 낮추고 로열비 지급에 동반되는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기여할 수 있다.

IV. 연구결과 활용 및 정책적 제언

독일 코르데스사의 상표권 분쟁에 대한 연구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레드 산드라’와 ‘카디날’을 제외한 나머지 상표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지만 향후 장미품종에 대한 로열티 요구에서 상표를 매개로 하는 것은 이전보다 줄어들 것이다. 이는 2003년부터 코르데스사 품종들도 대부분 품종보호권을 획득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표보다는 품종보호권으로 권리화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에 이르지 않도록 유의

할 필요가 있다.

일본 경성장미원예회사에 대한 로열티 선지급으로 발생한 미수금 문제는 남은 미수금을 수출물류비 지원에서 일괄 지원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연구결과는 2003년 4월 이후 무단증식한 품종을 이용하여 생산한 절화장미는 일본으로 수출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정책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장미재배농가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미리 대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품종의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하여 제도적 개선 내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국가품종목록제도의 확대시행이다. 현재 국가품종목록제도에서는 그 대상을 5개 작물로 한정하고 있으나, 대상품목을 전 식물종자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품종보호 및 관리제도는 품종보호등록과 국가품종목록으로 이원화되는데, 품종보호등록이 신품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중점이 주어지는 반면, 국가품종보호는 보호품종 중에서 고품질의 종자만 거래되게 함으로써 양질의 농작물 공급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국가품종목록제도의 확대시행은 품종의 로열티 시장을 규율하는 또 하나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UMMARY

The following presents the measure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current outstanding issues arising from the royalty rights concerning rose varieties.

First, the issue of trademark infringement. Recently, there has been a case, where a German company, Kordes' Söhne Rosenschulen GmbH, has filed a suit claiming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loss incurred from the infringement of many of its trademarks including "Red Sandra" and "Kardinal." Kordes' is expected to obtain a favorable decision on the suit, except two of its trademarks, Red Sandra and Kardinal, which have been invalidated by challenge. It is anticipated the royalty rights disputes arising from trademark infringements will decline once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Rights becomes more wide spread. However, because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s such as in trademark cases are enforceable by criminal and civil suits, one should be careful to avoid any infringements on the existing trademarks. In trademarks filed for roses, Kordes' has registered trademarks in 32 varieties of roses, while no other foreign breeding companies has any registered trademark under the same classification.

Second, the issue of collecting royalty payments. When the Allied Legal Corporations of Korean Rose Growers owed royalty in an amount of 880 million won to the Keisei Rose Nurseries, Inc. of Japan, the Korea Agricultural and Fishery Marketing Corporation stepped in and paid the royalty in advance on its behalf and financed the amount of royalty to the organization in a form of a loan. Since then, only the half of the amount financed to the organization has been repaid, while other

half still remains uncollected. On the surface, while this problem may appear to be a simple credit/debt financial issue, there may be a lack or failure in policy. Although, the Corporation may take legal approach in collecting the remaining amount, but such measure may invoke public protest and rallies by the rose growers that may eventually lead to a national issue which the government wants to avoid. Here, since the recovery of financed loans in this case deducted from the export subsidy, it would be a most favorable course of action to allocate a lump sum of fund from the export subsidy to solve this issue.

Third, coping with the situation in advance for "cut-roses" (grown without prior permission or agreement) imported into Japan - for example. Starting on June 2003, due to the new Plant Variety Protection Rights, any proprietary cut-roses which have been grown without prior agreement with the licensor exported to Japan can be bar from entry. As such, korean rose growers must obtain prior permission (royalty agreements) on proprietary roses which are exported to Japan, in order not to infringe on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Rights. And, the agency or the nation affected by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Rights must promulgate the policies and regulations in advance to prevent and avoid any future or potential infringement issues.

Fourth, issues arising from varieties of common knowledge. According to Seed Industry Law, the protection rights of any foreign plants or flowers made known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of incorporating them into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Rights (varieties of common knowledge), are retroactive to the filing date in the event the right has been obtained. In case of roses, because the prescribed filing deadline was June 30, 2002, most well-known varieties of foreign roses have

been filed from February to June 2002. Thus, a variety of rose of foreign origin which is registered and protected by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Rights can exercise its legal rights on the same type rose which has been grown or produced in the latter half of 2002 (grown without prior consent or agreement from its rights holder).

However, her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if a variety of rose has been planted prior to the filing date of the same variety of rose, its rights cannot be enforced under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Rights. That is, the date of any well-known variety of foreign roses which is planted in Korea before filing for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Rights has more legal significance. Such cases will fall under the "previously planted varieties" and are not subject to infringement. For those types of roses which have been planted after the filing date of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Rights, are subject to infringement and the foreign rights holders can exercise their rights to obtain due royalties. Here, to establish and obtain fair and amicable settlement, an arbitration or mediation from a third party made be required.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1. Objectives
2. Contents
3. Methods of the Study

Chapter 2. Status quo of Rose Production

1. Rose Products
2. Ex- and Import of Roses
3. Royalties of Rose Varieties

Chapter 3. Royalty Conflicts of Rose Varieties

1. Trademark Infringement of Kordes' Söhe Rosenschulen
2. Issue of Collecting Royalty Payments
3. Other Current Issues of Royalty Rights

Chapter 4. Systems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Varieties

1. International Systems
2. Korean System
3. Systems of other Countries

Chapter 5. Juristic Analysis on Current Issues

1. Trademark Infringement
2. Plant Variety Protection Rights

Chapter 6. Policies and Measures for Variety Protection Rights

1. Directions of Variety Protection Policy
2. Measures for Variety Protection Rights of Roses

Chapter 7. 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APPENDIX 1. Revision of Variety Protection Law in Japan

APPENDIX 2. Breeding of Rose Varieties in Kordes' Söhe Rosenschulen GmbH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내용	2
제3절 연구방법	4
제2장 장미의 생산관련 일반현황	5
제1절 장미의 생산 현황	5
제2절 장미 수출입 현황과 일본의 장미시장 동향	9
제3절 장미품종 로열티 관련 현황	15
제3장 장미품종 로열티 분쟁 실태 및 현안	19
제1절 독일 코르테스사 상표분쟁	19
제2절 일본 경성장미원예회사와의 로열티 협정 관련 문제	22
제3절 기타 현안문제	25
제4장 품종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내외 제도와 동향	30
제1절 국제 제도와 동향	30
제2절 국내의 품종보호제도	40
제3절 외국의 품종보호 제도와 동향	47
제5장 현안문제에 대한 법률적 분석	55
제1절 상표소송 판례 분석	55
제2절 품종보호권 논점 분석	65

제6장 품종보호 권리화 대응방안	69
제1절 품종보호정책의 기본방향	69
제2절 장미품종의 권리화 대응방안	71
제7장 요약 및 정책적 제언	81
참고문헌	86
부록 I. 일본의 품종보호권 개정	88
1. 종묘법 개정안 개요	88
2. 관세정률법 개정안 개요	100
부록 II. 독일 코르데스사의 품종개발 과정 및 로열티 수준	104
1. 품종개발 과정	104
2. 품종별 로열티 수준	106

표 목 차

제2장

<표 2-1> 품목별 화훼생산액 추이	5
<표 2-2> 장미 재배면적 및 생산량	6
<표 2-3> 2001년도 지역별 장미 생산현황	7
<표 2-4> 장미 품종별 출하 비중과 외국의 주품종 현황	8
<표 2-5> 장미의 수출 비중	10
<표 2-6> 장미의 국가별 수출실적	11
<표 2-7> 장미의 수입 비중	11
<표 2-8> 일본의 절화류 및 장미 소매가격 지수 추이	13
<표 2-9> 일본의 국가별 장미 수입동향	14
<표 2-10> 일본시장에서 수입산 장미에 대한 지불의향 가격	15
<표 2-11> 장미의 로열티 수준	17
<표 2-12> 구미원예수출공사의 로열티 지급 실적	17
<표 2-13> 구미원예수출공사 경영에서의 로열티 비중	18

제3장

<표 3-1> 코르데스사와의 로열티 협정	19
<표 3-2> 코르데스사와 로열티 분쟁 진행과정	20
<표 3-3> 장미 상표분쟁 양측 주장내용과 대법원 판결요지	21
<표 3-4> 화종별 품종보호출원 심사현황	26
<표 3-5> 출원인별 품종보호 출원 현황	27

제4장

<표 4-1>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의 성격과 관계	31
<표 4-2> 지적재산권의 분류	32
<표 4-3> 농업관련 품종보호법 타결 상황	35
<표 4-4> UPOV 협약의 개정 과정	36
<표 4-5> UPOV 가입국 현황	36
<표 4-6> UPOV 협약의 내용(1991년 협약 기준)	37
<표 4-7> UPOV 협약 비교	38
<표 4-8> 종자 관련 국내법의 변천	41
<표 4-9> 특허법과 종자산업법의 식물 신품종의 보호	41
<표 4-10> 품종보호 대상작물	43
<표 4-11> 품종관련 지적재산권의 비교	47
<표 4-12> 일본의 지적재산권 분류	52

제5장

<표 5-1> 소송쟁점 및 판결	57
<표 5-2> 보통명칭에 대한 판결	58
<표 5-3> 경매행위에 대한 판결	61

그림 목 차

제2장

<그림 2-1> 화훼류 주요 품목별 수출액 추이	10
<그림 2-2> 일본의 화훼시장 규모	12
<그림 2-3> 일본의 화훼류 수입액 추이	13

제4장

<그림 4-1> 품종보호 출원·심사·등록절차	45
--------------------------------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을 다자간 무역협상의 대상으로 추가하였는데, 이로써 지적재산권의 국제화가 크게 확대되게 되었다. 또한 2002년 우리나라가 국제식물신품보호동맹(UPOV)에 가입함에 따라 식물품종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준수해야 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여건변화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는 1995년 「종자산업법」을 제정해 품종보호제도를 정비하였다. 품종보호제도는 먼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되는 것으로 출발되는데, 「종자산업법」의 시행년도에 27개 작물이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2002년 말까지 113개 작물이 보호대상 작물로 지정되었다.

품종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현재 가장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장미품종이다. 장미가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된 2001년도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품종의 로열티와 관련한 분규가 있었고 분규와 관련된 후속문제 및 법적 공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규의 배경을 보면, 종자의 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 인정이 일반화되고 품종보호제도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종래에 품종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던 많은 생산자들이 품종육성자로부터 지적재산권 관련 로열티를 요구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장미의 경우에는 품종보호권 성립 이전에 상표권으로 로열티를 요구함으로써 분규가 발생하였고 이는 법정소송으로 전화되었다.

1997년에 독일의 육종업체인 코르데스(Kordes)사는 자사 품종에 대해 상표등록을 마친 뒤, 국내 장미재배농가들에게 품종의 로열티 지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장미재배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로열티 협정이 파기됨에 따라 코르데스사는 절화장미 경매사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1심 재판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 측이 승소하였으나, 2001년 12월의 2심 재판에서 약 5천만원의 로열티를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코르테스사에 지불해야 하는 내용의 패소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도 장미품종의 로열티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보다 심각한 것은 장미의 품종보호권이 2003년부터 등록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제 장미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일반화되고 로열티 지급은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 나아가 기존의 무단식재 종자에 대한 권리침해 여부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장미품종과 관련된 로열티 문제를 전반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로열티 관련 현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먼저 로열티 분쟁 실태를 사례 중심으로 고찰하여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현안에 대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나아가 이 연구는 장미품종의 지적재산권, 특히 품종보호권의 권리화에서 파생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해 법률적, 정책적 검토를 함으로써 합리적 대응방안들을 제시한다.

제2절 연구내용

연구내용으로 제2장에서는 장미의 생산관련 일반현황들을 조사·분석한다. 먼저 장미의 생산 실태를 조사하는데, 장미생산 전체에 대한 것 뿐 아니라 품종별 생산현황도 조사한다. 다음으로 장미의 수출입 현황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특히 주된 수출국인 일본의 장미시장을 같이 분석한다. 그 다음 장미품종에 대한 로열티 지불실태, 즉 로열티 수준과 지불방법을 조사한다.

제3장에서는 장미품종의 로열티 관련 분쟁 실태를 다룬다. 먼저 독일 코르테스사와

상표권 분쟁 내용을 고찰한다. 여기서는 특히 상표권 침해로 제소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진행경과를 살펴보고 향후 진행사항을 전망한다. 다음으로 일본의 경성장미원예회사와 로열티 협정으로 발생한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장미생산업체들 간의 채권·채무문제를 살펴본다. 여기서는 미수금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연대보증인에 대한 강제회수 이외의 다른 대안을 모색해 본다. 그 다음에는 현재 장미생산업체가 당면한 현안들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무엇보다 품종보호의 출원 및 등록 현황과 품종보호권이 성립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고찰한다. 그리고 최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단증식 품종을 이용한 수입장미의 반입금지조치 문제를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국내외의 품종보호제도를 분석한다. 먼저 국제적 품종보호제도를 살펴본다. 여기서는 WTO/TRIPs의 품종보호제도와 UPOV 협약 내용을 조사·분석한다. 다음으로 국내 제도로써 「종자산업법」에 의한 품종보호제도를 분석한다. 그 다음 품종보호에 대한 외국의 제도 및 동향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독일과 일본의 제도가 사례로 조사된다.

제5장에서는 장미품종 관련 현안 중에서 법률적 판단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 분석을 시도한다. 상표권 소송과 품종보호권의 쟁점사항에 대한 법리 해석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상표권 소송에 대해서는 판례분석이 실시된다.

제6장에서는 장미품종의 품종보호 권리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대응방안은 크게 법률적 대응과 정책적 대응으로 대별되는데, 법률적 대응에서는 상표권에 대한 대응과 품종보호권에 대한 대응을 제시한다. 그리고 정책적 대응에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현안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통상정책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항과 품종 기술개발로 대처해야 할 방안을 제안한다.

끝으로 제7장에서는 연구내용을 요약하는 형태로 결론을 도출한다.

제3절 연구 방법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는 현장조사와 문헌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이 동원되었다. 먼저 현장조사로 로열티 분쟁 사례의 당사자들을 만나 경과과정을 조사하고 그들의 입장을 청취했다. 특히 상표권 분쟁의 당사자인 독일 코르데스사를 방문하여 그들의 입장을 파악함과 동시에 장미품종 사용과 관련한 건설적인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또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방문하여 장미품종 관련 현안문제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조사했다. 그리고 종자관리소를 방문하여 장미의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 현황을 조사하고 품종보호권의 법적 해석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영농현장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 장미품종과 관련한 현안문제에 대한 농업인들의 견해를 청취하고 로열티 지불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문헌연구로는 무엇보다 품종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종자산업법」을 중심으로 한 품종보호권에 연구와 상표권 및 특허권에 대한 법률연구가 수행되었고, 국제적 품종보호제도인 UPOV에 대한 연구와 TRIPs 내의 품종보호 내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나아가 제도비교를 위해 외국의 품종보호제도를 조사하였는데, 그 대상은 독일과 일본의 제도였다.

이 연구에서는 법적 소송에 대한 판례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사법전문기관인 법률사무소의 위탁연구 형태로 수행되었다.

제2장 장미의 생산관련 일반현황

제1절 장미의 생산 현황

1. 화훼생산에서 장미의 위치

전체 농림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화훼류 비중은 1985년 0.6%에서 2002년 약 2.4%에 달하는 등 그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해 왔다<표 2-1>. 특히 전체 농림업 중에서 화훼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2001년 0.34%)보다 화훼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화훼는 타 작물에 비해 소득률이 높은 작목분야이다.

<표 2-1> 품목별 화훼생산액 추이

(단위: 백만원)

	농림업 총 생산액(A)	품 목 별 화 훼 생 산 액								B/A (%)	
		계 (B)	절화류			분화류	구근류	화목류	종자류		관상수 류
			장미								
1985	13,003,188	74,599 (100.0)	14,369 (19.3)	1,828 (2.5)	14,726 (19.7)	1,656 (2.2)	8,459 (11.3)	33 (0.0)	35,356 (47.4)	0.57	
1990	18,396,596	239,348 (100.0)	59,224 (24.7)	10,158 (4.2)	99,516 (41.6)	4,641 (1.9)	19,487 (8.1)	701 (0.3)	55,779 (23.3)	1.30	
1995	26,736,135	508,970 (100.0)	225,757 (44.4)	63,019 (12.4)	189,046 (37.1)	6,890 (1.4)	19,583 (3.8)	377 (0.1)	67,317 (13.2)	1.90	
2000	33,000,722	664,998 (100.0)	301,245 (45.3)	127,049 (19.1)	268,499 (40.4)	5,846 (0.9)	29,276 (4.4)	1,605 (0.2)	58,527 (8.8)	2.01	
2001	33,632,743	696,597 (100.0)	330,502 (47.4)	149,840 (21.5)	234,701 (33.7)	6,972 (1.0)	50,572 (7.3)	2,220 (0.3)	71,630 (10.3)	2.07	
2002	33,427,628	789,300 (100.0)	373,000 (47.3)	167,900 (21.3)	297,000 (37.6)	6,900 (0.9)	34,000 (4.3)	2,900 (0.4)	75,500 (9.5)	2.36	

주: ()안은 구성비임

자료: 농림부, 「화훼재배현황」, 각 연도.

화훼 생산액은 1985년 746억원에서 2002년 7,893억원으로 지난 17년 동안 10배 이상이 증가하는 등 연평균 약 15%의 증가로 농림업 증가율 6%보다 훨씬 빠른 증가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초 정부의 시설화 정책으로 유리온실이나 자동화비닐온실이 보급되면서 화훼산업이 첨단산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화훼의 품목별 생산액 구성은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1980년대까지 관상수류 중심에서 1990년대 초부터 분화류 중심으로,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는 절화류와 분화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절화류·분화류 비중 증가는 화훼재배가 토지이용형에서 시설이용형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반영하며, 화훼생산 및 소비구조가 후진국형인 관상수류에서 선진국형인 절화, 분화류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절화류는 통계에 잡히는 것만 20품목 이상으로 많은 작목이 재배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장미, 국화, 백합의 비중이 높다. 특히 장미의 경우 전체 화훼 생산액의 21.3%(2002년)를 차지하고 있고, 절화 생산액에서는 45.0%를 차지하여 대표적인 화훼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장미는 「생산유통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1994~97년 기간에 재배면적이 급증하였다. 1990년 장미 재배면적은 159ha로 절화 전체면적의 15.8%에 불과했으나 2002년에는 장미재배면적이 771ha로 절화 전체면적의 30.7%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장미의 생산량도 크게 늘어나 1990년의 8,200만본에서 2002년에 8억 5,300만본으로 증가하였다. 이 결과 2002년도의 장미 생산량은 절화 전체 생산량의 41.6%를 차지하게 되었다<표 2-2>.

<표 2-2> 장미 재배면적 및 생산량

	재배면적(ha)			생산량(백만본)		
	장미(A)	절화전체(B)	A/B	장미(C)	절화전체(D)	C/D
1990	159	1,006	15.8	82	765	10.7
1995	481	2,323	20.7	513	1,766	29.0
2000	766	2,625	29.2	630	1,716	36.7
2002	771	2,508	30.7	853	2,051	41.6

자료: 농림부, 「화훼재배현황」, 각 연도.

장미의 지역별 재배농가 분포를 보면, 경기지역이 전체 재배농가의 44.0%인 718호, 경남지역이 14.8%인 241호로 고양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김해시를 중심으로 한 영남남부지역에 밀집되어 있다<표 2-3>. 재배면적 또한 경기지역이 전체 면적의 39.4%, 경남지역이 18.0%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액도 이들 두 지역이 전체의 65.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근년 들어 전남지역과 충북지역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표 2-3> 2001년도 지역별 장미 생산현황

	농가수(명)	재배면적(ha)	생산액(백만원)
서울	3(0.2)	1.2(0.2)	89(0.1)
부산	83(5.1)	30.9(4.2)	4,510(3.0)
대구	43(2.6)	22.0(3.0)	3,400(2.3)
인천	18(1.1)	7.4(1.0)	927(0.6)
광주	39(2.4)	22.9(3.1)	2,547(1.7)
대전	2(0.1)	1.3(0.2)	2(-)
울산	2(0.1)	0.5(0.1)	16(-)
경기	718(44.0)	287.0(39.4)	68,665(45.8)
강원	33(2.0)	12.7(1.7)	2,488(1.7)
충북	81(5.0)	30.7(4.2)	6,880(4.6)
충남	76(4.6)	30.9(4.2)	2,405(1.6)
전북	43(2.6)	33.0(4.5)	8,610(5.7)
전남	142(8.7)	65.7(9.0)	12,110(8.1)
경북	76(4.6)	31.3(4.3)	5,265(3.5)
경남	241(14.8)	131.3(18.0)	30,190(20.1)
제주	32(2.0)	19.3(2.7)	1,736(1.2)
합계	1,632(100)	728.1(100)	149,840(100)

자료: 농림부, 「화훼재배현황」, 2002.

2. 장미 품종별 재배 현황

화훼류는 품종에 따라 각기 선호도와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품종이 재배방법과 출하선까지 좌우한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장미의 품종 수와 품종별 재배면적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아직까지 없다. 다만 농수산물유통공사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거래되는 경매실적으로 장미의 품종 수와 품종별 유통비율을 유추해 볼 수는 있다. 국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품종은 ‘레드 산드라’ 등 160여개 품종이 재배되고 있으며 상위 10개 품종이 전체 출하량의 80.4%를 차지하고 있다<표 2-4>. 이를 보면 주로 적색계 중·대륜 장미 품종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 장미 품종별 출하 비중과 외국의 주품종 현황

구 분	국내 장미				네덜란드 (1995)			일 본 (1996)	
	1997		2002		큰 꽃	작은꽃	스프레이	큰 꽃	스프레이
	품종	비율	품종	비율					
1	레드산드라	39.0	레드산드라	23.6	First Red	Frisco	Evelion	롯데로제	리틀마블
2	카디날	9.6	비탈	11.5	Prophyta	Escimo	Nikita	노블레스	엘로우미미
3	로바렉스	9.4	환희	10.7	Madelon	Kiss	Diadeem	테네케	환타지아
4	롯데로제	8.5	카디날	7.4	Noblesse	Mercedes	Joy	파레오	프린세스
5	레드벨벳	3.1	사피아	5.2	Jacaranda	Motrea	Princess	알스메어G	미니장미
6	무드	2.8	노블레스	4.4	Redvelvet	Lambada	PinkDilight	마니티	마닛슈
7	사피아	2.7	샤샤	3.1	Escada	Gabriele	PurplePrince	테리라	프라이드엔조이
8	리틀마블	1.9	로즈유미	2.4	Vivaldi	Safari	Sentyna	세피아	웬디
9	머라이케리	1.7	골든게이트	2.1	Tineke	Sauvenion	Porcelina	듀카트	규피드
10	골든메달	1.7	리틀마블	2.0	Texas	Jaguar	Red Ace	도로렛	조이
전체	167품종	100	165품종	100	-			-	

주: 1) 우리나라의 품종은 1997년, 2002년 양재동 출하 물량 기준

2) 네덜란드는 알스메어 시장 기준

3) 일본은 동경 大田화훼시장, Miyoshi & Co.(소비자 선호품종은 2003년에도 유사함)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공판장 내부자료; 홍성호, 「세계화훼시장 규모와 주요 작물 및 품종 현황」, 중앙종묘주식회사, 1996.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비교적 개발연도가 오래되고 널리 알려진 품종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에는 ‘카디날’이나 ‘레드 산드라’와 같은 기존 품종 이외에 ‘비탈’ 등 수출에 적합한 신품종 위주의 생산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네덜란드의 알스미어 시장 상위 10대 품종 중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고 있는 품종은 거의 없으나, 일본과는 비교적 선호도가 비슷하다. 그러나 일본이 적색(32.7%), 핑크(27.4%), 오렌지색(11.5%), 황색(7.1%), 백색(8.5%) 등 다양한 품종을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적색계 품종 위주로 단조로운 편이다. 그리고 네덜란드와 일본 등 화훼 소비 선진국에서는 큰 꽃과 함께 스프레이 장미를 선호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스프레이 품종은 최근에 도입되었다.

일본은 우리나라 장미의 주 수출시장으로 일본 시장 기호에 맞는 품종의 선택은 수출 확대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표적 장미 품종은 적색계 ‘레드 산드라’였다. 5년전에 비해 ‘레드 산드라’의 비중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이다. 최근 ‘레드 산드라’의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비탈’이나 일본시장에서 선호 품종인 ‘롯데로즈’와 ‘리틀 마블’ 재배가 증가하고 있다.

제2절 장미 수출입 현황과 일본의 장미시장 동향

1. 장미 수출입 현황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화훼는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품목이었으나 1998년 이후부터는 무역수지 흑자품목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화훼부문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1990년대 초부터 실시되어 수출확대를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화훼류 수출은 1990년 249만 달러에서 2001년에는 3,185만 달러로 지난 11년간 12.8배 증가하였다.

장미가 화훼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까지만 해도 전체 화훼수출의 1%에도 미치지 못 하였으나 최근에는 30%를 상회하고 있다. 전체농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1%에 이르러 대표적인 화훼수출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표 2-5>.

<표 2-5> 장미의 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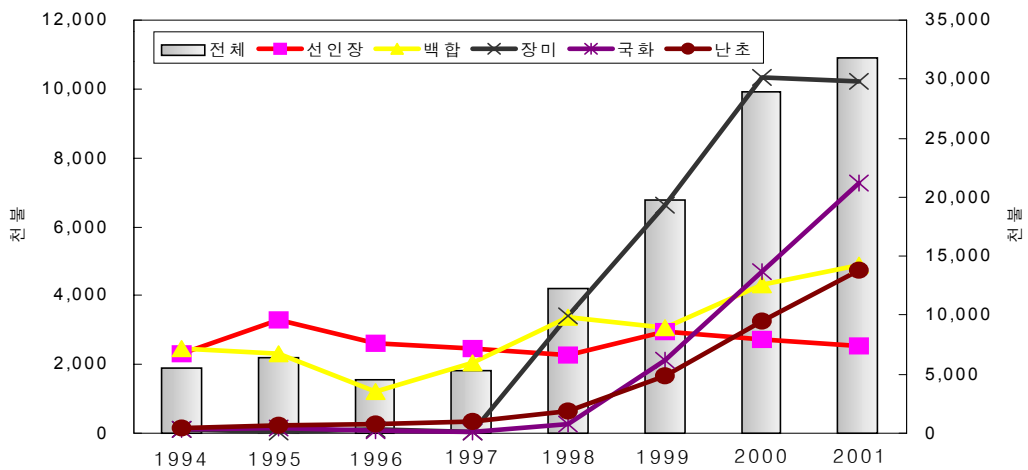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장 미(A)	0.05	3.4	6.6	10.3	10.2
화훼류(B)	5.3	11.5	19.8	28.9	31.8
농산물(C)	1,187.9	1,002.2	1,003.4	1,133.5	1,251.9
A/B	0.9	29.6	33.3	35.6	32.1
A/C	0.004	0.3	0.7	0.9	0.8

자료: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2.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화훼수출은 선인장과 백합이 주도하였으나 1998년부터 장미가 화훼류 수출품목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2-1>. 이는 장미의 경우 그동안의 생산기술 향상 및 지속적인 품질개선 등으로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장미의 주 수출시장인 일본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종인 ‘리틀마블’, ‘롯데로제’, ‘노블레스’ 등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수출이 활발해졌다.

<그림 2-1> 화훼류 주요 품목별 수출액 추이



자료: 농림부, 「화훼재배현황」, 2002.

장미의 국가별 수출은 일본이 전체의 99%에 이르러 일본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 외에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시장 개척의 노력에 의해 중국, 대만 등에 일부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표 2-6>.

장미의 수입은 그리 많지 않다. 연간 수입액은 대략 100만 달러 선이 되고 화훼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6%에 수준에 머물고 있다<표 2-7>. 1999년 이후 주된 수입국은 네덜란드가 되고 있으나, 최근 중국으로부터 장미 수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여기서 네덜란드로부터의 수입은 품종의 품질과 관련이 있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가격과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6> 장미의 국가별 수출실적

(단위 : 톤, 천불)

구분	1998		1999		2000		2001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일본	416	3,368(98.5)	849	6,492(98.0)	1,193	10,295(99.7)	2,110	10,216(100)
중국	2	3(0.1)	16	122(1.9)	-	-	0.5	2(-)
홍콩	-	-	-	3(-)	-	-	-	-
기타	6	48(1.4)	1	7(0.1)	3	29(0.3)	1.5	2(-)
계	424	3,419(100)	866	6,624(100)	1,196	10,324(100)	2,112	10,220(100)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표 2-7> 장미의 수입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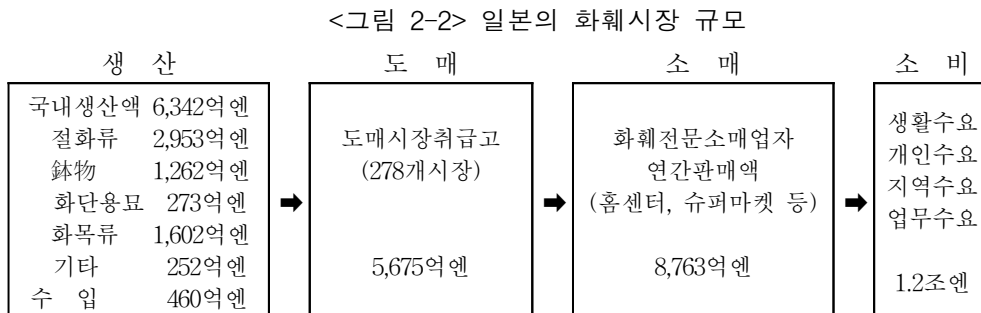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장미(A)	2.4	0.5	1.0	1.0	1.3
화훼류(B)	30.3	13.2	17.3	19.5	20.7
농산물(C)	6,284.7	4,663.9	4,681.3	5,104.5	5,325.3
A/B	7.9	3.8	5.9	5.1	6.3
A/C	0.04	0.01	0.02	0.02	0.02

자료: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2」; 「화훼재배 현황 2002」

2. 일본의 장미시장 동향

일본에서 화훼류의 거래규모는 생산단계(수입포함)에서 약 7,000억엔 정도이며, 이 중 약 80%에 해당하는 5,700억엔 정도가 도매시장을 경유하여 유통되고 있다. 홈센터, 슈퍼마켓 등 화훼 전문소매업자 등을 거쳐 최종 소비단계에서의 화훼 거래규모는 약 1.2조엔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그림 2-2>. 그러나 일본의 화훼시장 규모는 1990년대 중반이후 경기후퇴 영향으로 관혼상제, 호텔장식 등 행사·영업용 수요가 침체하고 가정용 소비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정체경향을 보이고 있다.

화훼류의 연도별 소매가격지수 추이도 거의 정체 상태에 있다. 절화 전체의 소매가격은 1991년경까지는 상당히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소폭 등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장미 또한 1997년까지 상승 추세에 있었으나 최근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2-8>.



자료: 農業開發研修センター 내부자료, 2000. 6.

일본의 화훼류 수입액은 1990년 278억 엔에서 1996년에는 486억 엔에 이를 정도로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1996년을 정점으로 2000년에는 422억 엔을 기록하는 등 최근 정체 내지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본의 경기침체로 화훼소비가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엔저 현상, 항공비 인상 등 수입원가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8> 일본의 절화류 및 장미 소매가격 지수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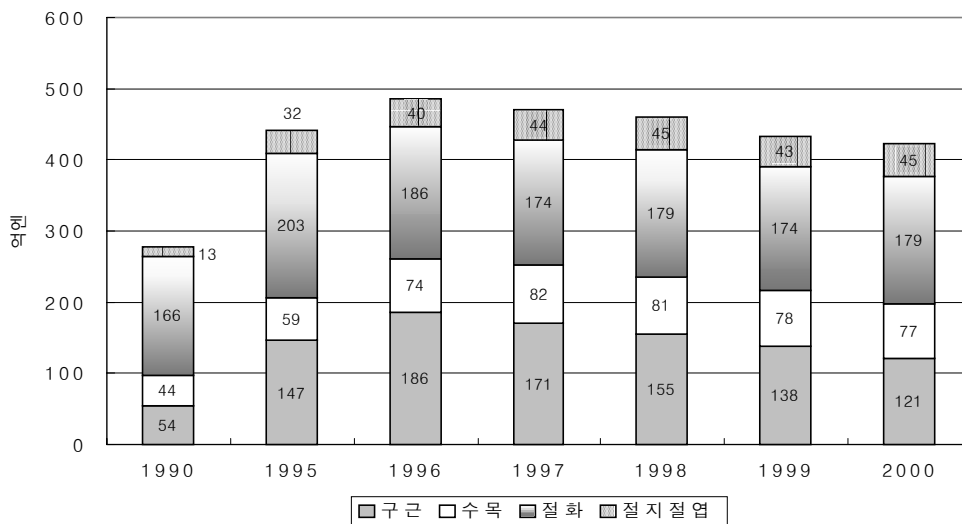
구 분	절화 전체	장미
1995	100.0	100.0
1996	98.0	101.1
1997	101.5	102.5
1998	102.5	101.3
1999	100.1	98.7

주: 기준년도1995=100

자료: 農村文化社, 「日本フラワービジネス年鑑」, 2000.

품목별로는 구근류와 절화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구근류의 경우는 절화 생산용으로 종구를 들여와 생산농가에 보급되고 있다. 절화류 비중은 1990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최근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고 구근류는 1996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그림 2-3>.

<그림 2-3> 일본의 화훼류 수입액 추이



자료: 農村文化社, 「日本フラワービジネス年鑑」, 2000.

일본의 수입절화 시장에서 1990년대 중반이전까지 네덜란드, 태국, 뉴질랜드가 절화 수입액의 약 70%를 담당하였다. 최근에도 이들 3개국이 절화수입액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1990년대 초에 비해 그 비중이 크게 줄었다. 특히 네덜란드의 비중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최근 한국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비중은 1990년대 중반까지도 일본수입액의 1%에 불과하였으나 1998년부터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나라가 화훼수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IMF 사태이후 환율상승으로 우리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장미 수입동향을 보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6,000만 송이를 상회하고 있다. 2001년에는 전년대비 4.3% 증가한 6,249만 송이를 수입했다. 국가별로는 한국산이 2,890만 송이 수입되어 46.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인도산이 2,090만 송이로 33.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표 2-9>. 예전에는 인도산이 일본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1998년부터 한국산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산 장미의 인지도 상승으로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산은 품질면에서 일본산에 뒤떨어지지 않으나, 규격 및 선별이 일본만큼 엄격하지 않아 가격이 일본산 가격의 60~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2-9> 일본의 국가별 장미 수입동향

(단위: 천송이,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한 국	68(0.2)	11,022(28.2)	25,429(44.8)	23,761(39.7)	28,904(46.3)
인 도	24,178(66.2)	19,205(49.2)	20,628(36.3)	21,410(35.7)	20,903(33.4)
네덜란드	9,216(25.2)	5,706(14.6)	7,258(12.8)	10,524(17.6)	8,060(12.9)
이스라엘	638(1.7)	1,283(3.3)	881(1.6)	123(0.2)	-
베 트 남	384(1.1)	1,476(3.8)	1,803(3.2)	2,304(3.8)	2,315(3.7)
기 타	2,026(5.6)	376(0.9)	776(1.3)	1,772(3.0)	2,310(3.7)
계	36,510(100)	39,068(100)	56,775(100)	59,894(100)	62,492(100)

자료: 일본 식물방역소 통계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일본의 화훼류 수입상 및 취급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산 장미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색상, 착화수, 품종, 가격 등 전반적으로 보통수준 이상이지만, 규격·선별 상태에 있어서는 일본이나 네덜란드에 비해 열세에 있다는 평가이다. 이에 비해 네덜란드산에 대해서는 색상, 착화수 등 모든 면에서 보통수준 이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규격·선별 상태가 양호하다고 한다. 반면, 인도산 등 동남아시아의 경우는 한국이나 네덜란드에 비해 가격을 제외하면 모든 부분에서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시장에서의 수입장미는 결국 한국과 네덜란드의 경쟁으로 귀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네덜란드가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0> 일본시장에서 수입산 장미에 대한 지불의향 가격

(단위: 엔)

일본산	한국산	화란산	인도산	베트남산
100	77~108	108	31~62	62

주: 롯데로제 품종 기준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일본 화훼류 수입상 및 취급업자 조사자료에서 재구성

한국산 장미의 품질에서의 문제점은 네덜란드 꽃에 비해 조기개화하여 상품수명이 짧은 것과 품질이 균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주된 것이다. 또한 신선도에 문제가 있으며, 습식유통시 박테리아 검출이 너무 많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일본의 화훼류 수입상과 도매시장 참여자의 지불의사가격은 이러한 품질상의 차이를 대체로 반영하고 있는데, 수입한 장미(롯데로제)에 대한 지불의사가격에서 네덜란드산이 한국산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한국산 중에서도 품질이 우수한 것은 일본이나 네덜란드산과 비슷한 경우도 있었다<표 2-10>.

제3절 장미품종 로열티 관련 현황

우리나라의 장미 생산이 소규모일 때에는 장미 품종 개발권자가 묵인하고 있었으나

생산과 수출이 증가하자 품종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2001년 우리나라가 UPOV(식물신품종보호연맹)¹에 가입함에 따라 로열티 지급은 불가피한 사항이 되고 있다. UPOV는 신품종에 대한 개발권자의 권리는 물론 무단증식된 농산물의 수입 금지, 배상 청구권까지 인정하게 하고 있어 품종 사용에 따른 로열티 지급은 국내 제도의 정비와 함께 수용해야 하는 사항이 되는 것이다. 절화 중 장미와 백합은 국내 육성 수출 품종이 극소수에 불과하고, 현재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무단 도입 품종을 가지고는 장미 수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품종 로열티에 대한 WTO협정에서도 신품종에 대한 보호권을 인정하고 있어 품종보호제도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미 주 수출국인 일본에서도 최근 「종묘법」과 「관세정률법」을 개정해서 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².

장미 품종에 대한 로열티 수준은 품종육성자 및 품종에 따라 다양하다. 일본 경성장미는 롯데로제·리틀마블 등 품종에 대해 1주당 80~100엔, 독일 코르데스사에서는 1주당 1달러 내외의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으나, 통상 신품종에 대한 로열티는 이보다 높게 나타나고, 실제 농가들이 지불하는 로열티는 부가세를 포함해 1,200~1,800원 선이 된다.

로열티 지불방식은 작목입식단계에서 입식량 및 재배면적에 따라 지불하는 방식과 생산 후 출하량에 따라 지불하는 방식이 있으나, 통상 입식량에 따라 로열티 지불이 이루어지고 있다. 로열티가 장미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농가가 선택한 품종과 재배기간, 재배면적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농가들이 장미품종에 지불하는 로열티를 1주당 평균 1,500원으로 가정하고 3.5년간 재배한다고 할 경우 장미농가의 평당 연간 로열티는 8,570원이 된다. 이를 단보(300평)당으로 환산하면 257만원이 되고, 장미 본당으로는 17원 정도가 된다<표 2-11>. 현재 장미 1본당 생산자가격이 300~350원 선이므로 로열티가 생산가격의 약 5%를 차지하게 된다.

1 1961년에 창립된 UPOV(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y of Plant)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가간 기구로 식물 신품종 개발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2003년 2월 현재 52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2 2003년 4월 1일에 개정된 관세정률법에서는 무단 증식한 육묘로부터 재배된 농산물이 수입될 경우 세관에서 국내 반입을 금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표 2-11> 장미의 로열티 수준

구 분	로열티 수준	비고
평 당	1,500원/주(부가세 포함)×20÷3.5 = 8,570원	- 평당 식재량: 20주 - 재배연수: 3.5년 - 평당연간 생산량: 500본
300평당	8,570원×300평 = 2,571,000원	
본 당	8,570원÷500본 = 17.1원	

자료: 농가조사

장미 로열티가 생산비 및 생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작목의 경우와 비교분석하기 위해 국화의 로열티에 대해 분석을 시도한다. 사례가 된 곳은 구미원예수출공사였는데, 여기서는 국화생산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었고 지불방식은 출하량에 따른 지불 형태였다. 공사의 로열티 지불액은 <표 2-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출하량 증가와 함께 매년 늘어나고 있었다.

공사의 국화생산에서 로열티가 영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였고 당기순이익에서는 약 30~45%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표 2-13>. 개별 사례를 곧바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로열티가 생산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있어서 장미가 국화보다 좀더 높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2> 구미원예수출공사의 로열티 지급 실적

육종회사명	2000		2001		2002	
	수량(본)	금액(€)	수량(본)	금액(€)	수량(본)	금액(€)
Fides	6,125,890	56,573.19	3,009,225	27,744.41	3,510,396	33,668.04
CBA	1,684,830	16,971.34	1,884,020	15,708.63	1,336,040	12,358.37
Dekker	714,140	7,462.22	3,051,970	31,893.09	3,261,380	34,081.42
Deliflor	902,160	9,982.09	1,969,042	20,450.51	2,646,140	26,461.40
Yoder	512,180	4,737.67	491,870	4,549.80	-	-
Cleangro	-	-	-	-	427,570	2,565.42
계	9,939,200	95,726.51	10,406,127	100,346.44	11,181,526	109,134.65

자료: 구미원예수출공사 내부자료, 2003.

<표 2-13> 구미원예수출공사 경영에서의 로열티 비중

단위: 백만원, %

구 분	로열티(A)	영업비용(B)	당기순이익(C)	비율	
				A/B	A/C
2001	118	5,857	401	2.0	29.4
2002	132	5,719	288	2.3	45.8

자료: 구미원예수출공사 내부자료, 2003.

제3장 장미품종 로열티 분쟁 실태 및 현안

제1절 독일 코르데스사 상표분쟁

1. 상표분쟁 경과

1998년 독일의 육종회사 코르데스사가 자사의 장미품종에 대해 상표등록을 하고 품종 사용에 대한 로열티 지불을 요청하자, 동년 5월 국내에서 「장미상표권 대책위원회」(한국화훼협회·생산자 단체·수출업체·전문인 등 22명)가 구성되어 코르데스사와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이 협상에 따라 동년 9월에 한국화훼협회는 코르데스사와 <표 3-1>과 같은 포괄적인 로열티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 협정에서는 기식재 식물에 대해서는 품종에 따라 로열티를 면제하거나 주당 50센트 혹은 1달러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신규로 도입하는 품종에는 주당 1달러의 로열티 및 10%의 부가세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그리고 식재한 품종의 수량은 농가가 코르데스사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게 했다.

<표 3-1> 코르데스사와의 로열티 협정

구 분	품 종 명	기 식 재	신규 도입시
오래된 품종	산드리나, 멜로디, 카디날, 카니발, 자카린다, 멜세데스, 키스, 엘라자, 알스메어폴드, 레드산드라, 테사스, 달라스(12)	로열티 및 부가세 면제	- 주당 1달러 - 부가세 10% - 현장 실사비 · 농가 8만원 · 법인 22만원
최근 품종	사샤, 칼리브라, 프리스코, 람바다(4)	주당 50센트	
신개발 품종	에스키모, 드림, 니콜, 코르벳, 에멀리, 바닐라, 비탈, 아마데우스(8)	주당 1달러	
	24품종		

자료: 한국화훼협회

그런데 장미재배농가의 자진신고율이 저조하자(대상농가의 11%만 신고), 1999년 2월 코르데스사는 협정 파기를 선언하고 동년 12월에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경매물량에 대해 상표사용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한편, 코르데스사의 로열티 요구에 대해 한국화훼협회는 1998년 7월 코르데스사의 2개 품종 ‘레드 산드라’와 ‘카디날’에 대해 상표무효심판 청구를 한다.

<표 3-2> 코르데스사와 로열티 분쟁 진행과정

날짜	코르데스사	한국화훼협회	농수산물유통공사
1997. 3.	‘레드산드라’ 등 상표등록		
1997. 3월 이후	상표등록 후 재배농가에 로열티 요구		
1998. 5.		외국식 장미품종표기를 우리말로 변경하여 경매	
1998. 7.		레드산드라, 카디날에 대해 상표무효심판청구	
1998. 9.	코르데스사와 한국화훼협회 간 로열티 협정체결		
1999. 2.	코르데스사가 로열티 협정 파기 선언		
1999. 12.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2000. 5.		레드산드라와 카디날에 대한 상표등록무효심판에서 무효심결됨.	
2000. 7.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승소
2001. 6.		상표등록무효소송(특허법원) 2심 패소	
2001. 12.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패소
2002. 1.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에 상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
2002. 11		상표등록무효소송(대법원) 3심 승소(확정판결)	

코르데스사 제기한 경매한 상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1심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하였는데, 2심 판결은 ‘레드 산드라’를 비롯한 10개의 코

르데스사 상표사용에 대해 약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하였다(경매물량의 1속당 20원의 로열티 계산). 현재 이 소송건은 대법원 상고 중에 있다.

2. 상표무효심판청구소송의 대법원 판결요지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병렬적으로 진행된 한국화훼협회의 상표무효심판청구에서는 화훼협회는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 패소했으나 2002년 11월에 열린 대법원 최종심에서 상표무효로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다. 대법원의 판결요지는 ‘레드 산드라’ 및 ‘카디날’이 거래업계에서 장미의 품종명으로 사용하는 보통명칭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표 3-3> 장미 상표분쟁 양측 주장내용과 대법원 판결요지

<p>코르데스사 (원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건의 등록상표는 절화장미를 재배하기 위해 장미묘목을 개발하였던 원고가 다른 모습의 절화장미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임의로 ‘주홍색, 추기경, 홍관조, 빨간색을 의미하는 Kardinal, Red Sandra를 선택하여 만든 영문 표장으로서 애당초 그 지정상품을 가리키는 일반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나중에 장미 거래업계를 비롯하여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까지 널리 장미의 한 품종을 지칭하는 보통 명칭으로 된 것도 아니며, 오히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세계적 육종회사인 원고가 개발한 절화장미의 신품종에 사용되는 상표로서 널리 알려져 있음.
<p>한국화훼협회 (피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르데스사의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 관용표장 및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이므로 상표법 등록 무효에 해당됨. - 장미품종에 대해 상표권을 주장하는 것은 ‘볼펜’을 상표로 사용하겠다는 말과 같음. - 동시에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함.
<p>대법원 판결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건 등록상표가 등록사정일인 1997년 2월경에는 절화장미의 한 품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음. - 이 상품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품종을 구별하여 장미를 구입하는 수요자 사이에서 이 상표가 특정인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력 있는 상표가 아니라 장미의 한 품종의 일반적 명칭으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음.

‘레드 산드라’와 ‘카디날’에 대한 상표무효 확정판결은 현재 상고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예상되는 바로는 상표가 무효가 된 ‘레드 산드라’와 ‘카디날’을 제외한 나머지 8개의 상표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의 손해배상액을 2심 판결에 근거해 추정해 보면 그 액수는 당초의 약 5,000만원에서 약 43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제2절 일본 경성장미원예회사와의 로열티 협정 관련 문제

1. 로열티 협정 체결 경과

1998년 독일의 코르데스사가 자사 품종에 대해 로열티를 요구하던 시점에 일본의 경성장미원예회사도 자사 품종에 대해 로열티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일본으로의 수출을 제재하겠다고 위협하자, 장미재배농가들은 「한국장미생산자단체연합회」(이하, 한장연)를 결성해 대책마련을 시도한다.

농림부를 포함한 관련 기관과의 여러 차례 협의 끝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된다.

- ① 「한장연」과 경성장미원예회사 간에 로열티 협정을 체결함.
- ② 협정상의 로열티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장미농가들에게 용자하는 형태로 경성장미원예회사에 선지급하고 용자액을 3년 동안 농가들이 수시분할로 상환함.

로열티 협정에 따라 지불해야 할 로열티 크기는 8,800만엔(8억 8,000만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이것은 경성장미원예회사 11개 품종의 전국재배면적을 추정하여 도출한 것이다.

$$\begin{aligned} * \text{로열티 금액} &= 50\text{엔} \times (\text{롯데로즈, 참밍, 파레오 재배면적}) \times \text{평당 } 18\text{그루} \\ &+ 60\text{엔} \times (\text{나머지 } 8\text{개 품종 재배면적}) \times \text{평당 } 18\text{그루} \end{aligned}$$

「한장연」과 경성장미원예회사 간의 실제적인 로열티 협정은 1999년 2월에 체결

되었고, 결정된 로열티는 동년 5월과 12월에 각각 4억 4,000만원씩 두 차례로 분할·지급되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장연」 간의 용자계약은 용자기간(1999. 5. 29 ~ 2002. 10. 30) 동안 연 5%의 금리로 용자하고, 용자액의 상환은 수출되는 장미의 송이당 15원씩을 수출물류비 지원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했다. 그리고 용자 기간에 상환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에 잔액을 일시상환하게 했다.

2. 용자액 상환 경과

일본 장미품종에 대한 로열티 지급으로 인한 문제는 수출장미 송이당 15원씩의 공제로 용자액을 전액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데서 발생되었다. 거래기간 종료시점인 2002년 10월 말까지 원금이 약 4억원 정도만 회수되어 회수율이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자금 회수가 이처럼 부진하게 된 것은 협정서상의 로열티 부과가 1999년 당시 「한장연」 산하 21개 법인의 재배장미 중에서 경성장미원예회사의 11개 품종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유행에 민감한 장미의 특성상 중간에 신품종으로 대체되면서 로열티 부과 품목이 급격하게 감소된 데에 있었다. 또한 「한장연」 이란 조직 자체가 용자대상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편법으로 결성되었다가 용자 이후 별다른 활동없이 유명무실화 되어 채무를 적극적으로 책임지지 않고, 산하 농가들도 이를 개인의 채무로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용자금 회수가 부진하게 되었다.

거래기간 내에 전액 상환되지 않는 경우 용자계약상으로는 「한장연」이 잔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어있지만 「한장연」 이를 감당할 처지에 있지 못했다. 그리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일차적으로 연체이자를 동결하고 수출장미에 대한 공제를 계속해 원금상환을 지속하였다. 이 결과 2003년 6월말 현재 약 4억 3,400만원이 상환되고 상환율은 49.3%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연대보증을 한 농가들 중에서 부채상환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8개 농가에 대해 청구소

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당초에 연대보증한 자는 21개 법인 및 88명의 자연인이었지만, 이 중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이 없는 자는 자연인 8명에 불과했다.

3. 문제점

경성장미원예회사와의 로열티 협정에서의 문제점으로는 먼저 당시에 지급된 로열티가 과연 지적재산권상으로는 통상법상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것이었느냐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1998~99년 당시 일본의 경성장미원예회사는 한국에서 품종과 관련한 어떠한 지적재산권도 갖고 있지 못했다. 자사 품종에 대해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권이 없었고 품종보호권은 아직 성립하지 않은 단계였다. 이런 점에서 자사 품종에 대해 상표등록한 코르데스사와는 다른 처지에 있었다 할 수 있다. 이 당시 내세운 위협은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일본으로 수출되는 자사 장미에 대해 반입을 저지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 또한 그 당시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였다. 일본에서 품종육성자에게 품종의 종자 뿐 그 수확물에 대해 권리를 부여한 것은 2003년 2월 「종묘법」 개정안 제안되면서 비로소 입법화 되고, 동년 4월 육성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물품의 수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관세정률법」이 개정되고, 동년 6월 「종묘법」이 개정되면서 현실적인 제재수단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8년 이 당시에는 단순한 위협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이었는에도 불구하고 민관대책협의에서 로열티 지급을 결정한 것은 상황판단의 실패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민관합의에 의해 용자를 결정한 이상 용자금 회수에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택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되는 해당품종 장미 송이당 15원 공제는 지나치게 낮은 것이었다. 장미의 송이당 로열티는 평균적으로 15원 정도 되지만, 대상 장미의 전량이 수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로열티로 지급된 용자액을 전액 회수하기 위해서는 수출물류비의 공제액을 2배 정도 높였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내수용으로 경매되는 장미에도 15원의 로열티를 부과했어야 했다.

현재 당면한 문제로 회수하지 못한 용자잔액에 대해서 법적 조치에 의한 강제회수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연대보증한 88명 중 비교적 건실한 농가 8개에 모든 책임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로 인해 건실한 농가가 도산하거나 수출을 중단하게 되면, 정상적인 경영체만 피해를 본다는 의식이 만연하게 되고 이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다.

제3절 기타 현안문제

장미품종 로열티와 관련한 당면현안은 크게 외국육종회사와의 로열티 협정에 대한 이행 혹은 불이행으로 인해 파생한 문제들과 2003년 후반기부터 외국육종회사 품종들의 품종보호권이 성립함으로써 발생하는 로열티 지급요청, 특히 기식재 품종에 대한 로열티 요구문제로 구별된다. 그런데 외국육종회사들의 로열티 요구에서 파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분석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품종보호권이 성립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품종보호권 등록현황

장미품종의 로열티 문제는 현재 출원 중인 품종들이 등록되어 품종보호권이 성립하면 본격화된다. 2003년 7월 현재 화훼류의 품종보호 출원과 등록 상황을 살펴보면 <표 3-4>과 같다. 19개 화종에 총 796건이 출원되었는데, 화종별로 장미가 339건으로 전체의 42.6%를 차지하고 다음이 국화로 112건, 14.1%를 차지하고 있다. 출원 연도별로는 2002년에 473건이 출원되어 전체의 59.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2년도의 장미품종 출원의 한시적 규정 때문에 장미품종에 대한 대규모 출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장미의 경우 현재 21개 품종이 등록되었는데, 현재까지 이들이 모두 국산이지만 연내로 많은 외국품종들이 등록되고, 2004년까지는 2002년 6월말까지 출원한 “이미 알려진 품종” 대부분이 등록되게 될 것이다.³

장미의 품종보호 출원인별 현황을 보면, 2002년 6월말 현재 총 260개의 출원품종 중 경성장미원에회사가 92개 품종을 출원하여 전체의 35.4%를 차지하고 있고 외국계 품종이 전체 출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표 3-5>. 이는 장미품종의 육종에 대한 우리의 역사가 일천하고 아직 품종개발 수준이 낮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3-4> 화종별 품종보호출원 심사현황

구 분	연도별 출원실적(건수)							등록 실적	거절 및 취하
	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비모란선인장	57	3	9	15	14	5	11	23	1
시클라멘	2	-	-	2	-	-	-	-	-
봉선화	42	-	-	-	11	-	31	11	-
페튜니아	39	-	-	4	-	11	24	4	-
무궁화	6	-	-	-	3	-	3	-	-
장미	339	-	-	-	18	274	47	21	9
새우란	2	-	-	-	-	2	-	-	-
국화	133	-	-	-	-	94	39	-	-
백합	32	-	-	-	-	25	7	-	-
글라디올러스	20	-	-	-	-	14	6	9	-
나도풍란	8	-	-	-	-	8	-	-	-
덴드로비움	3	-	-	-	-	3	-	-	-
포인세티아	17	-	-	-	-	17	-	-	-
상사화	20	-	-	-	-	20	-	-	-
리시안서스	2	-	-	-	-	-	2	-	-
산취선인장	3	-	-	-	-	-	3	-	-
펠라고늄	13						13		
칼랑코에	36						36		
팬지	22						22		
계	796	3	9	21	46	473	244	68	10

주: 2003년 7월 현재

자료: 종자관리소

3 종자산업법에서는 품종보호의 조건 중의 하나인 신규성의 예외조항으로 이미 알려진 품종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屬) 또는 종(種)으로 정해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는 경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제13조의 2). 이에 따라 이미 알려진 장미품종은 2002년 6월 30일까지 출원한 경우 품종보호권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결과 2002년 상반기에 장미품종에 대한 대규모의 출원신청이 이루어졌다.

외국육종회사는 대체로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인은 출원서 제출 등 출원인의 출원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현재 (주)다고원예가 경성장미원에회사, 스크루사, 테라니그라 등의 품종을 관리하고 있어 가장 큰 대리점으로 활동하고 있다.

<표 3-5> 출원인별 품종보호 출원 현황

출원인	출원품종수	주요 품종명	국내 관리인
농촌진흥청	7(2.7)	화이트레이디, 핑크레이디, 레드퀸, 노을, 미향, 샤니, 스위트핑크	
경기도농업기술원	3(1.2)	퍼플드림, 레드엔젤, 스위트엔젤	
경상북도	4(1.5)	향기나, 유니나, 온누리, 진선미	
경상남도	4(1.5)	템테이션, 사브리나, 니나, 레드템	
봉계농산	4(1.5)	아라리오, 자네티, 나이젤, 미스윤3	
(주)바스텍	23(8.8)	핑크아라리오, 실라리안, 실라, 포에버, 그대랑, 쿤실라, 아시아나, 재희 등	
함훈식	1(0.4)	아리랑	
스크루사	31(11.9)	스크레마, 스크레블랑크, 스카론바, 스키나카, 스크레모란, 스크라시스 등	(주)다고원예
경성장미	92(35.4)	타니테프, 탄리카스, 탄셀본, 아사미레드, 루이게르단, 메이쿠아리스 등 88종	(주)다고원예
		코르드레케스, 스페케스, 코르엠질라, 코르레솔라 등 4종	코르데스
코르데스	25(9.6)	코르길로, 르호코, 코르리겔 등 23종	정명현
		코르라베아, 코르세레드 등 2종	박승문외 2명
델루이터	8(3.1)	루이에로스, 루이르네, 펜로그 등 8종	(주)기흥통상
테라니그라	15(5.8)	이네스, 셀라우룸, 셀루비디움 등 15종	(주)다고원예
럭스리비에라	42(16.2)	펙코우제니, 너프희, 루익라보 등 42종	(주)대양화훼종묘
프랑코로스	1(0.4)	골드스트라이크	(주)대양화훼종묘
계	260(100)		

주: 2002년 6월 현재

자료: 종자관리소, 「장미 품종보호 출원품종 화보」

2. 품종보호권 성립으로 발생하는 문제

장미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이 성립하게 되면, 해당 품종을 사용할 때 로열티 지급은 의무사항이 된다. 따라서 품종보호권이 성립한 이후⁴ 신품종을 사용할 때는 로열티 협정을 맺고 이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임시보호권 성립 이전에 식재한 품종은 로열티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알려진 품종의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의 성립 시기가 출원한 시점까지 소급된다는 데에 있다. 종자산업법 제13조의 2에 따르면, 알려진 품종으로 외국에서 이미 품종보호권을 획득한 품종이 국내에서 품종보호 등록이 되면 그 권리는 국내에서 출원한 시점까지 소급되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미 식재한 품종에 대한 로열티를 어떻게 규율하느냐 하는 것이 당면한 현안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실제로 이런 문제와 연관해서 외국육종회사들이 장미재배농가들에게 무단증식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실들이 영농현장에서 보고되고 있다.

3. 로열티 수준 문제

품종보호권이 일반화되면 품종사용시 로열티 지불은 일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바뀌게 된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는 것이 로열티 수준이다. 현재 영농현장에서 지불되고 있는 로열티 크기는 1,200~1,800원 수준으로 육종회사와 품종의 종류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균적으로 약 1,500원 수준이 되는데 국제적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계적인 장미육종회사인 독일 코르테스사가 제시한 자사의 품종에 대한 로열티는 예외없이 모두 0.8~0.85 유로 수준이었다. 이를 달러로 환원하면 약 0.9 달러(1,100원) 정도가 되었다.⁵

4 원칙적으로 품종보호권은 품종보호 설정등록이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한다(종자산업법 제55조). 그리고 품종보호에 대한 임시보호권은 출원품종에 대한 출원공고 이루어진 시점에 생기는데, 현재 종자산업법 개정안에서는 임시보호권의 성립 시점을 출원공고 시점에서 출원한 시점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5 2003년 2월 독일 코르테스사(본사)에서 조사

따라서 로열티 크기를 국제적 수준으로 적정화하고 품종 간의 격차를 줄여서 로열티를 균일화하는 작업과 로열티 지급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는 것이 정책적 현안이 되고 있다.

4. 수출에 대한 제재조치

절화장미 수출과 관련한 당면한 현안으로는 일본으로 수출되는 장미 중에서 무단증식된 종자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일본육종회사들이 일본 내의 반입을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에 일본정부가 신품종 육성자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면서 해외로 불법 유출된 종자로 생산된 농산물이 일본으로 다시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한 것과 관계된다. 2003년 2월에 제출되어 6월에 개정된 「종묘법」에서는 지금까지 종자에 대해서만 육성자권의 침해를 인정하던 것을 종자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수확물에게까지 침해인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무단증식한 종자로 생산한 농산물이 수입될 경우 세관에서 수입금지할 수 있는 「관세정률법」 개정안이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는 권리를 침해당한 품종개발자가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을 세관에 제출하여 침해가 인정되면, 세관이 수입 농산물에 대해 일본 내의 유통을 중지시키거나 수입업자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처리 또는 파기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육성자권 강화 움직임에 따라 일본의 육종회사들은 절화수입업체를 상대로 불법으로 수입되는 장미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육성자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절화수입협회에서도 회원인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의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장미의 주된 수출시장이 일본으로 되어있는 우리나라의 장미업계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동향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제4장 품종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내외 제도와 동향

제1절 국제 제도와 동향

1.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제도

생물 품종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협약에는 FAO의 국제식물유전자원 조약, UPOV, WTO/TRIPs 등이 있다⁶(표 4-1). 국제적인 논의의 주요 관점은 농업 식물 유전자원의 보호·이용, 신품종보호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 실행력과 구속력에 대한 사항이다. 국제협약의 기준가치 입장에서 자원 비사용가치에서 특정자원·기술에 대한 선택적 가치로 이행되고 있고 구속력이 강화되고 있는 단계이다.

FAO 식물유전자원조약⁷의 주요 논의는 식물 유전자원 사용에 의해 발생된 이익을 공정하고 균등하게 공유하고 종자의 자가 증식 등에 관한 농부권의 실현이다. FAO 유전자원조약은 천연자원 보유국의 주권을 인정하고 각국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할 권한을 보유함을 인정한 후 유전자원 접근 촉진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한다든지 유전자원 제공국, 특히 개도국에 이익을 환원하는 규정 마련이 기본 골격이다. 따라서 FAO 유전자원조약은 UPOV나 WTO와 달리 자원주권을 인정하는 유일한 협약이다.

UPOV 협약은 식물육종가의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지만 육종재료와 농민의 자가채종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 TRIPs)은 지적재산권 차원에서 가입국에게 품

6 육성자권리 또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국제협약 및 제도에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OECD종자보증제도 등도 있다. 그러나 CBD는 육성자권리나 지적재산권을 부정하고 있고, OECD종자보증제도는 국제간 종자보증 및 유통촉진에 주요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검토를 생략한다.

7 2001년 10월 121차 FAO 이사회에서 종전의 비구속적 규약을 구속성 있는 국제조약으로 개정하기 위한 작업이 단행되었다. 이에 따라 규약의 명칭이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 국제규약(International Undertaking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에서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으로 변경되었다.

중보호제도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상작물 및 권리보호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해져 있지 않다. WTO 협상의 주요국이 UPOV의 주도국이므로 WTO/TRIPs는 UPOV 협약을 기초로 세부사항이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표 4-1>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의 성격과 관계

구 분	FAO 유전자원조약	UPOV	WTO/TRIPs
규약성격	국제조약	연맹, 국가참여	국가 간 협상
대상	농업식물 유전자원	식물신품종보호	신상품·생명공학기술
기준가치	사용가치 간접적 가치 선택적 가치	사용가치 생산적 가치	사용가치 생산적 가치 선택적 가치
주요초점	자원주권·이용권	육성자 권리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한국가입	1983년 UN 결의 1991년 구속력결의	2002년 1월 가입	협상 추진중
자원주권	인정	부정	부정
농부권	인정	일부 인정	부정
육성자권리	인정	적극 주장	인정
지적재산권	인정	인정	적극 주장

자료: 이두순 외(1999)

이처럼 품종과 관련된 국제협약은 품종보호를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하여 경제적 이익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이지만 국가별 여건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향이 다르다. 대체로 유전자원 보유국인 개도국에서는 자원 보유에 대한 자원주권과 농부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반면 기술 및 유전자원 수집 능력이 강한 선진국에서는 육성자 권리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주장이 강하다. 특히 UPOV와 WTO/TRIPs에서는 육성자 권리나 지적재산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두 협약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가. TRIPs 협정의 개요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은 산업적 발명, 저작·창작 등 지적재산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의미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광의의 개념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되고 있다<표 4-2>. 식물 품종, 유전자원과 관련된 문체는 생명공학이 발전하면서 품종개발 기술의 노하우와 개발된 품종에 대한 물질특허 인정에 의한 육성권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다.

<표 4-2> 지적재산권의 분류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 특허권 : 물질특허, 제법특허, 용도특허
		◦ 의장권
		◦ 실용신안권
		◦ 상표권
	지리적표시권	
	저작권	◦ 지적재산권, 지적인격권, 저작인접권
	신지식재산권	◦ 산업저작권 : 컴퓨터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 첨단산업재산권 : 생명공학기술, 반도체집적회로 설계		
◦ 정보재산권 : 영업비밀		

자료: 김성준, 「WTO법의 형성과 전망」, 제4권, GATS, TRIPs, DSU, 1996.

19세기 초부터 선진국은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확대·강화에 노력해 왔다. 1883년 11개국 대표들이 파리에 모여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국제협약(파리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베른협약에서 저작권에 대한 보호협약이 체결되었다.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을 관리하고 세계지적재산권제도의 발전과 조화를 위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설립되어 있다. WIPO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을 관리하고, 서명국의 지적재산권법 시행을 지원하고, 국내법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해 있는 파리협약(1998년 가

입), 특허협력조약(PCT, 1984년 가입), 부다페스트조약(1988년 가입), 국제식물신품종보호조약(UPOV, 2002년 가입) 등이 WIPO가 주관하는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이다.

WTO에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상이 제기된 배경은 일부 선진국이 자국 개발 기술에 대한 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우루과이라운드의 다자간 협상 의제로 제안한 데에 있다. 이 결과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인 TRIPs 협정이 마련되게 되었다.

협상 과정에서 선진국 그룹은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마련을 추구하였고, 개도국 그룹은 지적재산권은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되어야 할 공적으로 보고 경제발전과 기술진보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TRIPs 협정은 전문과 총 7부, 73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① 국제무역의 왜곡과 장애 시정, ② 지적재산권의 유효 적절한 보호 촉진, ③ 행사를 위한 수단과 절차 확보, ④ 각국 법제를 충분히 고려한 분쟁의 다자간 해결과 분쟁 방지 보장, ⑤ 개도국의 특수한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행사를 위한 수단과 절차를 규정(전문)하고 있다.

TRIPs 협정의 적용 범위는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 대해 동 협정에 규정된 대우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기본 원칙으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 상표, 의장, 지리적 표시, 시행 절차, 분쟁 해결 절차 등을 내세우고 있다.

TRIPs 협정의 주요 논의 대상은 저작권, 특허권, 상표로서 지적재산권의 내용과 형태, 보호 기간, 보호 내용, 보호 대상이다. 이 중에는 농업 특히 농작물 품종과 관련된 특허권도 포함되어 있다.

나. 신제품 관련 지적재산권 협상의 추이

TRIPs 협정에서 식물의 신제품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권리는 식물의 신제품도 특허권과 같이 타인이 제조, 이용,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고, 기술적 진보로 인정되며

다른 형태의 개인 재산과 마찬가지로 매매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현재 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인 지적소유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특성을 갖고 있다.

- ① 육성자의 권리가 있다. 어떤 품종에 대한 식물 육성자의 권리 소유자는 타인이 사전 합의 없이 상업용으로 재생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⁸
- ② 품종 육성 및 종자 관련 기술개발 성과인 특정유전자의 특성은 특허로 보호가 가능하다.
- ③ 교역상의 비밀이 보장된다. 교역상 비밀은 보호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근친교배계통(inbred line)으로부터 생산된 교잡종자는 종자 제공자로부터 구입에 의해서는 접근이 가능하나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 개발된 근친교배계통은 육종회사의 비밀로서 접근이 불가능하다.⁹

TRIPs 중 식물특허 부분에 대한 협상의 주된 이슈와 타결 상황은 <표 4-3>과 같이 요약된다. 특허권 부여의 근거에 대해 개발도상국들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이 정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선출원주의를 주장하였으나, 기술강국인 미국이 주장한 선발명주의¹⁰가 채택되었다. 특허기간은 선진국이 주장한 출원일로부터 20년간이 채택되었고, 특허보호대상에 대해서는 식물 및 동물 발명을 제외하되, 식물변종은 특허 또는 특별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했다. 특허권에 대한 경과 조치로 TRIPs 협상은 “체약국들은 당해 체약국에 대한 협정 발효일로부터 일반적으로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본 협정 조항들을 적용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개도국은 4년 추가가 가능하고, 최빈개도국은 10년 추가가 가능토록하여 개발도상국을 한시적으로 보호하였다.

8 연구와 육종 목적을 위한 사용은 제한 받지 않으므로 식물 유전자원 그 자체에 대한 접근 제한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9 지적재산권에서 근친 교배계통에 대한 비밀은 F1 종자의 교배 모본을 지칭한다. 만약 개발도상국 원산인 재래종을 사용해 우량 품종이 육성될 경우, 개발권자의 품종은 보호되지만 모본이 비밀이어서 자원 원산지국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10 발명의 우선권은 발명을 최초로 실용화하였음을 증명하는 자에게 부여한다.

<표 4-3> 농업 관련 품종보호법 타결 상황

구 분	개도국	선진국	타결 내용
특허권 부여	선출원주의	선발명주의	미국 주장 선발명주의
특허 기간	국내 입법으로 기간 결정	출원일로부터 20년	선진국 주장 채택
특허보호 대상	동·식물을 제외	살아 있는 유기체 포함	동·식물 제외, 식물 변종은 보호
특허권 경과 조치	의무 유예 주장	즉각적 의무 이행	개도국 한시적 보장

현재 도하개발아젠다(DDA)의 TRIPs 분야에서는 생명체에 대한 특허 불허 규정에 대한 재검토, 유전자 연구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대두된 유전자에 대한 특허보호 문제, 유전자원 공유문제, 그리고 생물다양성협약(CBD)과 연계하여 유전자원 제공자와 기술 개발자간의 이익공유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¹¹. 이러한 논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시각차가 존재한다. 대체로 개도국은 TRIPs 협정의 개정을 통해 유전자원의 지속적 이용이 가능한 활용과 이익공유 등을 국제계약에 의한 구속적 의무로 하고자 한다. 반면에 선진국들은 국내법 하에서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 규율을 주장한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로 인해 TRIPs 분과 내에서는 아직 뚜렷한 절충안이 도출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3.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1961년 「식물 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중자 선진국 중심으로 채택되고, 1968년에 동 조약이 발효되어 식물의 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연맹 UPOV¹²가 발족되었다. UPOV는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에 관한 유일한 국제협약으로 회원국간 표준화된 심사방법, 각국의 품종 출원·심사 동향,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 교류가 목적이며,

11 윤미경·최윤희(2002) 참조

12 UPOV는 원래 불어인 Union Internationale Pour la Protection des Obtentions Vegetales의 약자인데 영어로는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y of Plant가 된다.

신품종 보호 권리와 내용 결정, 최저한의 보호기간, 내국민 대우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UPOV의 협약은 1961년에 제정되어 1972년에 1차 개정을 하였고, 1978년에 2차 개정, 1991년에 3차 개정이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표 4-4>.

<표 4-4> UPOV 협약의 개정 과정

구 분	개정 연도	개정 내용	발효 기준
제1차 개정	1972	미가입국가의 가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분담금의 부담 구분 개정	1977년
제2차 개정	1978	연맹에의 가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약 내용의 탄력화	1981년
제3차 개정	1991	육성자의 권리 강화, 보호대상식물의 확대 등	1998년 4월

자료: UPOV.

2003년 2월 현재 UPOV 가입국은 총 52개국으로 유럽 국가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였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1982년, 중국이 1999년에 가입하였고 우리나라는 2002년 1월에 UPOV의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표 4-5>.

<표 4-5> UPOV 가입국 현황

구 분	국 가
유럽(30)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 몰도바, 포르투갈, 키르기스스탄,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벨라루스
북아메리카(3)	캐나다, 미국, 멕시코
남아메리카(11)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파라과이, 트리니다드, 타바코, 우루과이, 볼리비아, 파나마, 브라질, 니카라과
오세아니아(2)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시아(4)	일본, 중국, 이스라엘, 한국
아프리카(2)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자료: UPOV.

UPOV의 협약(1991년 개정) 내용은 10장 42조로 구성되어 있고 신제품 보호를 위한 계약 당사자의 일반적 의무, 육성자의 권리, 육성자 범위, 품종의 명명에 대한 국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표 4-6>.

<표 4-6> UPOV 협약의 내용(1991년 협약 기준)

구 분		조항의 내용
제1장	정의	법, 육성자, 육성자의 권리, 품종의 정의(1조)
제2장	계약 당사자의 일반적 의무	당사자의 일반적 의무(2조), 보호대상 속·종(3조), 내국민 대우(4조)
제3장	육성자 권리 부여 조건	보호 조건(5조), 신규성(6조), 구별성(7조), 균일성(8조), 안정성(9조)
제4장	육성자 권리 부여를 위한 출원	출원의 제출(10조), 우선권(11조), 출원의 심사(12조), 임시보호(13조)
제5장	육성자의 권리	육성자 권리 범위(14조), 육성자 권리의 예외(15조), 육성자 권리 소멸(16조), 육성자 권리 행사제한(17조), 상거래 규제 수단(18조), 육성자 권리 기간(19조)
제6장	품종의 명명	품종의 명칭(20조): 호칭, 등록, 제3자 선취권, 명명 통보, 품종명 사용 의무, 품종 관련 표시 사항 등
제7장	육성자권리의 무효화 및 취소	육성자권리의 무효화(21조), 육성자 권리의 취소(22조)
제8장	연 맹	회원국(23조), 법적 지위 및 위치(24조), 기구(25조), 이사회(26조), 연맹사무국(27조), 언어(28조), 재정(29조)
제9장	협약 이행과 기타 의결 사항	협약 이행(30조), 계약 당사자와 국가의 관계(31조), 특별 의결사항(32조)
제10장	체결 규정	서명(33조), 비준, 수락, 승인, 계승(34조), 유보권(35조), 보호될 속·종에 관한 법령 통보와 공포해야 할 법(36조), 유효 등록과 과거 법의 폐지(37조), 협약의 개정(38조), 폐기(39조), 기존권리의 보호(40조), 협약의 원본과 공식 문서(41조), 기타 기능(42조)

자료: UPOV.

그런데 이 협약 내용은 그 이전의 협약에 비해 육성자의 권리가 더 보호하고 보호대상 식물이 더 크게 확대되는 쪽으로 개정된 것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보호대상 식물을 전 식물로 확대하고, 권리대상도 종자 뿐 아니라 그 수확물과 기본유래품종¹³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권리범위도 수출입까지 확대되고 보호기간이 15년에서 20년(과수·임목 25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권리의 예외조항도 동시에 추가되었는데, 그것은 농민의 자가채종을 허용한 것이다.<표 4-7>.

<표 4-7> UPOV 협약 비교

구 분	1978년 협약	1991년 협약
보호작물	가입시 5속종, 3년후 10속종 6년후 18속종, 8년후 24속종	가입시 15속종 10년후 전 식물
심사방법	기술, 식물재료	서류, 기술, 식물재료
권리대상	종자	종자, 수확물 및 수확물에서 직접 제조된 산물, 기본유래품종
권리범위	종자의 생산, 증식, 판매, 판매에 제공	종자의 생산, 증식, 판매, 판매에 제공, 수출, 수입
권리예외	비상업, 실험	비상업, 실험, 육종재료, 농민의 자가채종
보호기간	15년	20년(과수·임목은 25년)

자료: UPOV.

UPOV 협약내용 중 회원국의 품종제도 구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육성자의 권리부여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품종보호권의 성립요건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육성자의 권리부여 조건은 신품종이 ①신규성, ②구별성, ③균일성, ④안

13 기본유래품종(essentially derived variety)이란 주요특성이 원품종의 유전자형 또는 유전자형의 조합에 의해서 발현되고, 원품종과 분명히 구별되며, 특정 육종방법에 의한 특성만의 차이가 있는 품종으로 정의된다. 이것의 출현은 자연적 혹은 인위적인 돌연변이나 체세포 돌연변이, 여교잡 또는 유전공학에 의한 형질전환으로 가능하게 된다.

정성, ⑤품종명칭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신규성은 출원전 품종의 종자 또는 수확물의 상업적 판매 또는 처분이 없어야 하고, 출원국 내에서는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출원국 이외 국가에서는 접수일로부터 4년 이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¹⁴ 구별성은 출원서 제출시 일반인에게 알려진 다른 품종과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균일성은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관련 특성이 충분히 균일해야 함을 가리킨다. 균일성의 판단방법으로는 영양번식 및 자화수분품종은 이형주(off-type)의 숫자로 판별하고, 타화수분품종은 대조 품종과 비교하여 판단한다. 안정성은 반복번식후 관련 특성이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본질적인(essential) 특성에 있어 안정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판단방법으로는 제출된 표본이 연차간에 균일하게 나타나면 안정적인 것으로 본다. 끝으로 신품종은 품종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명칭을 가져야 한다. 이 명칭은 유성자의 권리가 소멸되더라도 자유롭게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품종보호제도의 세계적인 규범화는 신품종의 육성을 촉진하고 우수품종의 이용을 확대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인류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지만, 품종육성능력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갖춘 선진국과 다국적 종자회사의 독점적인 시장지배력만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우려와 반대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WTO/TRIPs 협정이 발족되면서 식물품종에 대한 보호를 의무화하는 품종보호제도는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기서 UPOV 체제는 품종보호와 관련해서 다른 어떤 국제기구보다 영향력이 크다. 그 이유는 세계 선진농업국의 신품종보호제도가 UPOV 협약 내용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품종에 대한 제반 정보가 UPOV조직을 통해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품종보호제도의 국제적인 신뢰가 UPOV 가입 여부에 따라 평가받고 있는 점도 주요한 이유가 된다.

14 단 수목류 및 덩굴류는 접수일로부터 6년 이내에 속해야 한다.

제2절 국내의 품종보호제도

1. 품종보호제도의 개념과 전개과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 초반부터 TRIPs와 UPOV 등에서 종자의 품종보호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신품종 보호와 육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선진화된 종자관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원화 체제로 유지되었던 종자관련법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기존 주곡종자를 대상으로 한 「주요농작물종자법」과 상업종자 대상의 「종묘관리법」을 통합하여 종자관리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일원화한 「종자산업법」이 1998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표 4-8>.

「종자산업법」에서는 식물신품종보호, 품종성능관리, 종자보증제도를 도입하였고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활용도 증진을 위해 농업유전자원의 수집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조문에 포함하였다. 또한 법 적용대상 작물이 기존 주곡종자와 채소종자에 국한되었던 것을 범위를 넓혀 모든 식물의 종자를 대상으로 하며, 채소종자의 유통 규제 위주의 관리법을 품종보호를 중시하는 종자산업 육성법으로 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특허법 제31조에서도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을 발명한 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법에 의한 식물특허제도는 식물의 특성상 특허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품종보호제도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특허법은 주로 공산품에 해당되며, 식물 신품종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많고, 농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허법의 요건에 합치되는 식물 신품종 개발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종자산업법을 제정하여 특별법 형태의 품종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무성번식식물에 대한 특허와 종자산업법에 의한 유·무성 번식식물의 보호제도를 비교해 보면 <표 4-9>와 같다.

<표 4-8> 종자 관련 국내법의 변천

구분	주곡종자	상업종자
1922	수도채종답보조규정 : 수도품종 종자 갱신 및 종자보급사업	
1962	주요농작물종자법 : 조곡 우량종자의 품종 보급과 종자갱신	농산종묘법 : 종자의 정부보증제도, 채소종자 유통관리법
1973		종묘관리법 : 종묘검사 강화
1974	국립종자보급소 설치 : 국가에서 보급종 종자를 직접 생산	
1998	종자산업법 : 법 대상 작물의 확대(모든 식물의 종자) - 종자유통 규제 위주 관리법 → 품종보호를 중시하는 종자산업 육성법 - 규제·관리법 → 육성법 - ‘종묘관리법’, ‘주요농작물종자관리법’의 통합 : 종자기금 수용 - 식물신품종보호, 품종 성능관리, 종자보증제도 도입	

<표 4-9> 특허법과 종자산업법의 식물 신품종의 보호

구분	특허법	종자산업법
목적	산업의 발전	농업의 발전
보호 목적물	산업소유권	식물의 품종
보호대상작물	무성번식식물	유성·무성번식식물(10년 이내 모든식물 품종으로 확대)
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재배심사
보호요건	발명의 성립성, 산업상이용가능성, 진보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신규성, 고유한 품종명칭
육종가권리범위 권리범위 예외 육종재료이용 자가채종	신청범위에 따름 육성자의 허락요함 육성자의 허락요함	법에 정한 범위에 따름 육성자 권리 예외 육성자 권리 예외
보호기간	15 ~ 20 년	20년(과수, 임목은 25년)

종자산업법에 도입된 품종보호제도는 신품종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로서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과 유사하게 육성자에게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품종보호권을 부여받은 육성자에게 그 품종에 대하여 상업적으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의 보급을 촉진하여 농업 생산성의 증대와 농민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품종보호제도의 도입에 따라 외국에서의 우수한 육종재료 및 유전자원의 도입이 용이하여 품종의 육성이 활성화되고 육종수준이 향상될 뿐 아니라, 출원 및 등록품종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유사품종개발에 대한 중복투자가 방지될 수 있다.

2. 품종보호제도의 운용실태

가. 품종보호 대상작물의 지정

품종보호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되어야 한다. 「종자산업법」 시행년도에는 작물 분야별로 27개 작물이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2002년 12월말 현재 113개 작물이 보호대상 작물로 지정되어 있다<표 4-10>. 우리나라가 2002년 1월 UPOV의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10년 이내, 즉 2012년 1월까지 품종보호대상을 모든 식물로 확대하여야 한다. 정부는 2004년에 41개 작물을 추가하고 2009년까지는 전작물에 걸쳐 확대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데 품종보호대상작물을 확대 지정하기 위해서는 품종개발의 국제경쟁력, 농가에 미치는 영향, 신품종개발 촉진효과 및 농작물 생산 및 수출 등 국내외 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대상품목의 확대가 한편으로 국내 유전자원의 국제적 보호와 관련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종자의 국제경쟁력이나 로열티 지급 문제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자의 품종이 국제경쟁력을 갖거나 품종경쟁력이 열세이지만 해당 작물의 수출이 많은 품목, 상표나 특허가 이미 권리화되어 로열티지급이 불가피한

품목, 자생식물 등 유전자원 보호 및 권리의 획득이 조속히 요구되는 작물은 조기에 대상품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반면에 대상작물 지정으로 인해 로열티의 추가지급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품목과 종자시장규모가 작거나 해당 작물의 품종분화가 미흡한 품목 등은 지정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

<표 4-10> 품종보호 대상작물

구 분	종류	대 상 작 물 명
식량작물	12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밀, 귀리, 고구마, 호밀, 팥, 녹두, 완두
채소류	20	무, 배추, 양배추, 고추, 토마토, 오이, 참외, 수박, 호박, 파, 양파, 당근, 상추, 시금치, 멜론, 녹색꽃양배추, 꽃양배추, 가지, 박, 팥초이
과수류	6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유자, 참다래
화훼류	45	비모란선인장, 리시안서스, 페튜니아, 고데치아, 봉선화, 히야신스, 시클라멘, 개나리, 무궁화, 팬지, 알스트로메리아, 금어초, 데이지, 상사화류, 조개나물, 덴드로비움, 나도풍란, 풍란, 새우란, 장미, 백합, 국화, 아이리스, 글라디올라스, 튜립, 포인세티아, 맨드라미, 스토크, 백일홍, 물망초, 시레네, 한련화, 금잔화, 알릿섬, 아게라툼, 윈추리류, 극락조화, 카틀레야, 온시디움, 옥잠화, 종꽃, 펠라고늄, 모란, 칼랑코에, 산취선인장
특용작물	26	느타리버섯, 참깨, 들깨, 땅콩, 유채, 당귀, 황기, 지황, 구기자, 마, 시호, 도라지, 결명자, 토천궁, 맥문동, 구릿대, 식방풍, 영지버섯, 강활, 하수오, 택사, 황금, 작약, 홍화, 더덕, 인삼
사료작물	4	라이그라스, 톨페스큐, 레드클로버, 오차드그라스
합계	113	

자료: 종자관리소

나. 품종의 보호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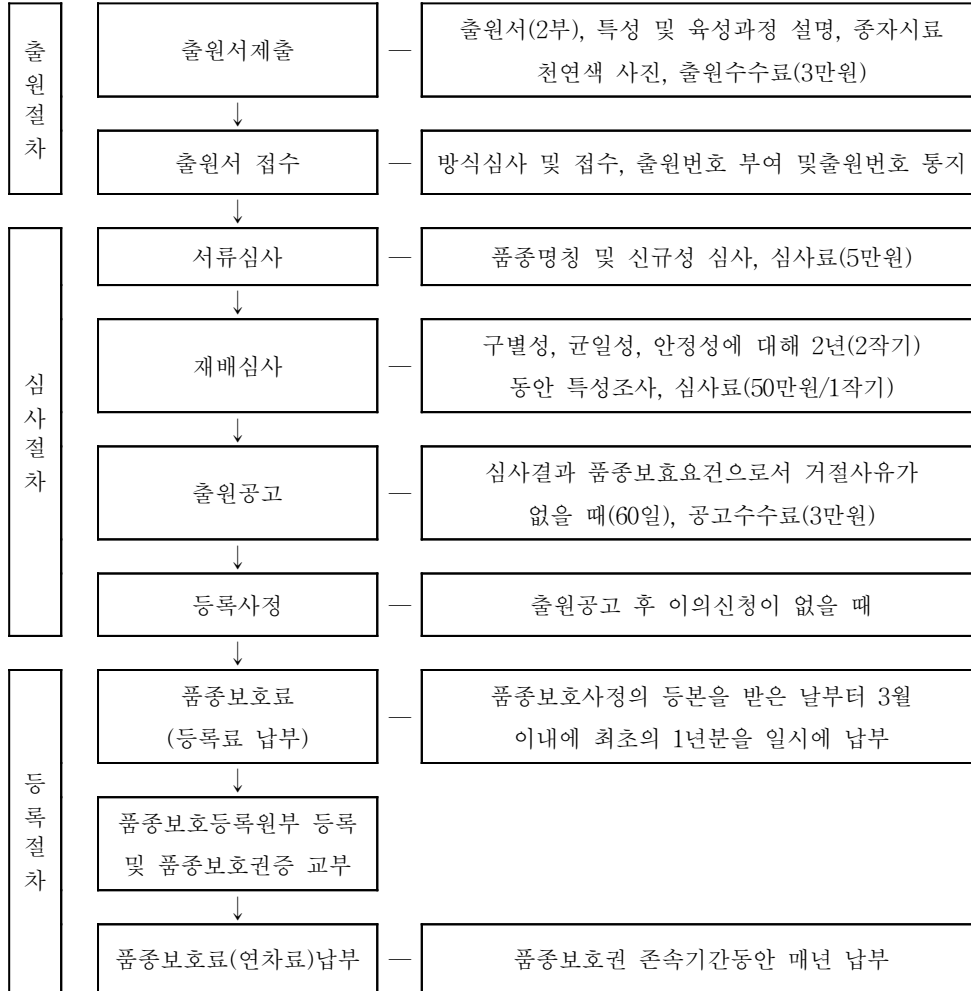
어떤 품종이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품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의 종자산업법에서는 UPOV 기준에 따라 품종보호 요건으로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고유한 품종명칭 등 5가지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품종보호를 받고자 출원한 품종이 5가지 요건을 갖추고 출원서가 소정의 방식에 위배되지 않으며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 품종보호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5가지 품종보호 요건은 UPOV의 육성자의 권리부여 조건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 ① 신규성(Novelty):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품종을 말한다. 신규성의 기준은 어떤 품종이 품종보호출원일 이전에 국내에서는 1년이상, 외국에서는 4년이상(과수 및 임목과 같은 영년생 식물의 경우는 6년이상) 당해 품종의 종자 또는 수확물에 대해 상업화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 ② 구별성(Distinctness):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한가지 이상의 중요한 특성에 있어서 명확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 ③ 균일성(Uniformity):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충분히 균일한 경우에 당해 품종은 균일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균일성은 해당 작물의 번식방법을 고려하여 작물별로 이형주수에 의해 판단한다.
- ④ 안정성(Stability): 반복적인 증식 후에도 등록당시의 중요한 특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새로운 품종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증식 후 또는 1대 잡종과 같이 특정한 증식주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 증식 종료 후에도 육성자가 정의한 본질적인 특성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 ⑤ 품종의 명칭: 다른 품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이 필요하다. 국가간 무역을 위해 품종명칭을 등록하는 경우는 원래 등록된 품종명칭에 음역(Transliteration)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다. 품종보호 출원 절차

품종보호 출원절차는 품종보호출원인의 인적사항, 품종의 명칭, 품종의 특성 등을 기재한 출원서와 출원수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다<그림 4-1>. 출원된 품종은 심사관에 의해 서류심사 및 재배시험을 통해 품종의 요건을 심사받는다. 심사는 품종명칭, 신규성은 서류심사로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은 재배시험 및 특성조사를 근거로 이루어진다. 심사결과 품종보호 요건으로서 거절사유가 없을 때는 60일간 출원공고를 거치게 되고,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등록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그림 4-1> 품종보호 출원·심사·등록절차



라. 품종보호권의 효력 및 벌칙

품종보호권 설정이 등록되면 품종보호권등록증이 출원인에게 송부되며 이때부터 품종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품종보호권이 존속되는 기간은 20년으로 되어 있으며, 영년생 작물인 과수 및 임목의 경우는 25년으로 되어 있다¹⁵. 품종보호기간

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품종의 보호권은 소멸되어 누구나 당해 품종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품종보호권자는 해당 보호품종을 증식, 판매하는 등의 과정에서 권리를 독점한다. 보호권자는 계약에 의해 타인에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때 실시권 양도에 따른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이 보호품종의 생산 또는 증식, 번식목적의 제조, 판매의 제공, 판매 또는 여타 방법의 유통, 수출입, 비축 등의 행위에는 육성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국내에만 그 영향이 미친다. 만일 육성자가 외국에서도 품종보호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그 나라의 관련 법에 따라 품종보호출원을 하여 보호권을 허여 받아야 한다.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 경우는 영리외의 목적으로 재배하거나 실험, 연구 또는 육종재료로 이용하는 경우이다. 농민의 자가채종도 예외로 인정되며 종자구입 당시 경작하고 있는 면적에 심을 수 있는 종자량으로 한다.

UPOV 협약에서는 출원의 접수 또는 공개와 권리부여까지의 기간 중에 육성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UPOV 가입국은 대부분 출원시부터 임시보호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심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이를 인정하고 있다. 특허법 등에서도 임시보호의 권리는 출원시점부터 폭넓게 적용하여 발명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현재 육성자의 보호권 강화를 위해 신품종의 임시보호권 부여시점을 출원공고일에서 출원공개일로 변경하기 위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품종보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종자산업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¹⁶

품종보호권의 권리내용을 품종관련 다른 지적재산권과 비교해 보면, 이는 <표 4-1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5 특허권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20년, 저작권의 경우는 사망 후 50년까지 존속한다.

16 좀더 정확하게는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소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처벌을 할 수 있다(제 169조).

<표 4-11> 품종관련 지적재산권의 비교

구 분	목 적	신청 및 효력	별 칙
상표권	○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여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	○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 → 서류심사 ○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 - 10년씩 갱신 가능	○ 권리침해 - 7년이하징역 1억원이하벌금 ○ 허위표시 - 3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
특허권	○ 무성적으로 반복 생산할 수 있는 변종식물을 발명한 자의 권리를 보호 - 산업적 이용성, 반복재현성 등을 보호	○ 특허청에 특허 출원 → 서류심사 ○ 등록일부부터 출원일 이후 20년 되는 날까지 유효	○ 권리침해 - 7년이하징역 1억원이하벌금 ○ 허위표시 - 3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
품종보호권	○ 품종보호대상 작물에 대한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 -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고유한 품종 명칭을 보호	○ 농림부(종자관리소)에 출원 - 서류 및 재배심사 ○ 등록이 있는 날부터 20년간 보호 - 과수·임목 25년	○ 권리침해 - 5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 ○ 허위표시 - 5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자료: 특허법; 상표법, 종자산업법

제3절 외국의 품종보호 제도와 동향

1. 독일의 품종보호제도

가. 품종보호 및 관리기구

독일에서 식물품종의 보호 및 관리는 연방농무성 산하의 연방품종관리청(Bundessortenamt, BSA)에서 담당하고 있다. BSA는 1949년 서독 점령군정하에서 「작물품종관리청」으로 출범하였는데, 1950년 서독의 연방농무성이 작물품종관리청의 업무를 인수하였고, 1955년부터는 연방품종관리청으로 독립하게 되었다.

현재 BSA의 본부는 하노버(Hannover)에 소재해 있고, 전국에 15개의 검사소가 있다. 이 기구의 전체 직원 수는 약 430명이며, 이중 하노버 본부에 약 150명이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신품종에 대한 검사업무를 이 인원으로 전부 감당하지 못해 전국에 산재한 약 450개의 대행기관에게 검사업무를 대행을 위탁하고 있다.

BSA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새로운 식물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 부여
- ② 품종거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식물품종에 대한 (거래)허가
- ③ 품종보호권이 부여되고 거래가 허가된 품종에 대한 특성유지 여부 관찰
- ④ 관할관청에서 품종의 진실성에 대한 사후심사
- ⑤ 품종에 대한 권리인정 및 규제를 위한 국제적, 국내적 협력사업 추진

BSA의 품종보호 실적을 보면 2002년까지 약 14,000 품종이 품종보호(권)를 받았고, 약 7,000 품종이 품종허가를 받았다.

나. 품종보호제도

1) 품종보호(Sortenschutz)

품종보호권은 특허권과 비교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서 식물의 육종에 대한 지적재산권이다. 품종보호권을 규율하는 품종보호법(Sortenschutzgesetz, SortG)에 따르면, 식물품종이 ①타 품종과 구별되고(구별성) ②동질적이고(균일성) ③지속적이며(안정성) ④신품종이며(신규성) ⑤등록가능한 품종명칭으로 표시될 때 보호받게 된다. 품종보호를 위한 전제조건인 구비 여부는 노지 혹은 하우스에서의 재배를 통해서만, 그리고 실험실에서의 보완조사를 통해서만 검증될 수 있다.

품종보호권리자는 품종의 증식물(종자와 수확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유통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생산할 배타적 권리를 가지지만, 신품종을 개발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품종보호권의 권리기간은 일반적으로 25년이지만, 호프와 감자, 덩굴류 및 수목류의 경우 기간이 30년이다.

2) 품종허가(Sortenzulassung)

품종허가는 경종작물품종과 채소품종의 상업적 판매를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품종허가의 법적 규율은 품종보호법(SortG)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종자거래법(Saatgutverkehrsgesetz, SaatG)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이는 고품질의 종자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질높은 농산물 공급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

품종허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은 노지 혹은 하우스의 재배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 ① (타 품종과) 구별성
- ② (품종 내에서) 균일성
- ③ (품종특성의) 안정성
- ④ 등록가능한 명칭

그런데 경종작물품종의 경우에는 여기에다 경작가치에 대한 검사가 추가되어야 한다. 즉 경종작물의 품종은 기존에 허가된 품종에 비해 가치를 결정하는 특성들의 총합에서 분명한 개선(발전)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 가치는 경작에 대한 개선이나 수확의 증가, 혹은 수확물에서 얻어진 부산물의 가치증가로 나타난다. 품종의 가치를 결정하는 특성은 포장과 실험실에서 검사하는 경작성, 저항성, 수확성, 질적 우수성 및 응용성에서 나오게 된다. 가치검사에서 대부분의 품종들은 최소 2년의 경작실험이 요구되지만, 곡물과 겨울평지, 사료작물은 3년의 경작실험을 필요로 한다.

품종허가는 10년(덩굴류의 경우 20년)의 권리기간으로 부여하고, 이 기간이 만료한 뒤 다시 연장할 수 있다. 통상 매년 약 1,000개의 경종작물 품종이 허가신청을 해서 300~350개의 품종이 연방품종관리청 품종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약 100개가 품종허가를 받게 된다. 채소류 품종은 매년 약 50개의 품종이 허가신청을 하고 있다. 삼림품종은

삼림종자및종묘법(Gesetz über forstliches Saat- und Pflanzgut, ForstG)에서 규율하고
주정부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품종유지 사후검사

품종보호나 품종허가는 품종이 등록된 시점의 특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품종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품종개발자의 체계적인 관리노력이 필요하
다 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BSA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BSA는 각 품종의 표준표본을 다년간 보관했다가 번식시킨 품종의 특성을
표준표본의 것과 비교함으로써 품종특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이러한 사후적
검사에서 품종의 특성이 유지되고 있지 못함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혹은 품종
허가가 취소된다.

4) 협력사업 추진

BSA는 품종의 저항성과 질적 우수성을 조사하기 위해 연방농림생물청, 연방농무성
및 주농무성 산하 연구기관, 그리고 대학부설 연구소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지역
적으로 상이한 입지들에서 품종을 검사하기 위해 주정부 산하 기구들, 특히 농업회의소
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BSA는 주(정부)들 간의 종자인정 및 종자거래를 위
해 연방차원의 중재기관 기능을 하고 있다.

BSA는 EU 내에서 품종 및 종자의 법규를 조화시키기 위한 협상에 동참하고 있고,
식물육종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인 UPOV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OECD는 일련의 주
요 종자에 대해 종자인증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약 30개의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특히 독일품종을 외국에서 채종하고 종자를 국제적으로 거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BSA는 독일 국내의 조정기구로 기능한다.

1972년부터 EU는 경종작물 품종과 채소품종에 대한 공동목록을 만들고 있는데, 이 목록은 EU 회원국들의 품종리스트에 기초하고 있다. 공동품종목록에 등록되면 그 품종은 EU 내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다. 2002년 현재 공동목록에는 9,000개 이상의 채소품종과 5,000개 이상의 농업용 식물품종이 등록되어 있다.

품종보호권의 심사와 관련해서는 100여개의 작물에 대해서 UPOV에 가입한 7개 EU 국가들은 수년전부터 긴밀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이들 국가들은 어떤 한 국가에서 검사한 결과를 서로 인정해줄 뿐 아니라, 특정 작물은 특정 국가가 검사를 전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 일본의 품종보호 제도 및 동향

가. 품종 보호제도

일본의 신품종 보호는 1978년 제정된 품종등록제에 따라 이루어져 왔고, 1982년 UPOV에 가입하면서 국제 수준의 종자 육성자 보호조치가 마련되었다. 그 후 육성자의 권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이 1998년에 도입되었다. 품종보호제도 운영기관은 농림수산성 종묘과와 종묘관리센터이며, 보호대상 식물은 재배되는 전체 식물로 지정되었다.

품종등록 요건은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출원 전에 양도하지 않은 것, 품종의 명칭이 기존의 것과 혼동되지 않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품종에는 ‘육성자권’이 발생하고, 품종등록을 받은 자는 ‘육성자권자’가 된다. ‘육성자권’이란 등록된 식물의 신품종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이용이라는 것은 ① 종묘의 생산, 판매, 수출입 등 ②수확물의 생산, 판매, 수출입 등이다. 육성자권의 존속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0년이고 과수 등의 다년생 식물은 25년이다.

현재 일본의 지적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지적재산기본법(2002년 법률 제122호)」 및 「知的財産戰略大綱(2002년 7월 3일 결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일본의 지적재산권

분류는 <표 4-12>과 같다. 특히 식물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권’은 「종묘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지적재산기본법」에서 일본정부는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상 또는 재정상의 조치 및 기타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제11조). 만일 국내시장에서 지적재산권의 침해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수입에 대해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기타 관계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제하에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범의 단속,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의 몰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제16조).

<표 4-12> 일본의 지적재산권 분류

산업소유권				저작권	육성자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발명	고안	디자인	마크	저작물	식물신품종

자료: 지적재산기본법

「지적재산전략대강」에서는 지적재산 보호강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육성자권 침해대책과 관련해서는 그 침해 판단을 용이하기 할 수 있도록 신속·간편한 DNA품종식별기술의 확립 등의 지원체제를 종묘법에서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 침해품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세관에서는 특허청 등의 관계성청과 협력하여 늦어도 2004년까지 국경조치의 구체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품종보호에 대한 최근 동향

UPOV의 「1991년 협약」이 1998년에 발효됨에 따라 일본에서도 신품종보호제도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품종보호제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 품종 개발자들이 권리 침해로부터 육성자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었다.

실제로 육성자권의 침해상황에 대한 2002년 10월의 조사결과를 보면, 신식품 권리보유자의 27%가 육성자 권리를 침해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권리 침해의 내용을 보면 일본 내에서 종묘의 무단증식·판매가 49%, 종묘의 무단증식 및 수확물 판매가 40%이고, 종묘가 해외로 반출되어 수확물이 일본으로 역수입되는 비율이 11%를 차지하고 있다.¹⁷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품종의 종묘에 대해서만 품종보호의 침해를 인정하던 것을 종묘 뿐 아니라 그 수확물에게까지 침해범위를 확대시켰다. 2003년에 6월에 통과된 「종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벌칙 대상범위의 확대이다(제56조). 현재 종묘에 대해서 육성자권을 침해한 자를 벌칙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 대상을 확대하여 종묘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수확물까지 확대하여 벌칙의 대상에 추가하고 있다.

둘째, 법인에 의한 육성자권의 침해에 대한 벌금액 인상이다(제60조). 현재 육성자권을 침해한 개인에 대해서는 삼년이하의 징역 또는 삼백만엔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 대해서는 삼백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법인에 의한 대규모 육성자권의 침해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벌칙에 대한 충분한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의 벌금액 상한을 1억엔으로 인상하였다.

이와 동시에 종묘가 무단으로 해외로 반출되어 그 수확물이 다시 일본으로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세정률법」을 개정하였다. 2003년 4월에 개정된 동 법에 따르면, 무단으로 해외 유출된 종묘로 생산한 농산물이 수입될 경우 세관에서 이것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즉 권리를 침해당한 품종개발자가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을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은 농산물 수입자·품종개발자 양측 주장을 수령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침해가 인정되면 수입된 농산물에 대해 세관이 일본 내의 유통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농산물을 수입업자가 자의적으로 처리 또는 세관이 파기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17 일본 농림수산성(2003), 「종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참고자료」

범죄행위로 판단되면 관세법에서 형죄가 적용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본의 이러한 육성자권 강화 움직임에 따라 일본의 육종회사들, 특히 장미 품종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경성장미원예회사는 절화수입업체를 상대로 불법으로 수입되는 장미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육성자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제5장 현안문제에 대한 법률적 분석

제1절 상표소송 판례 분석

1. 코르데스사의 상표권

가. 장미품종

독일 육종회사인 코르데스사는 우리나라 특허청에 ‘레드 산드라’(Red Sandra)등 23개의 상표에 대해 “나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해놓고 있다.

이 중 ‘레드 산드라’는 코르데스사에서 육종된 대형품종으로 우리나라에 80년대에 도입되어 현재 시장성이 가장 우수한 절화장미 품종으로 각광받고 있다. 화색이 적색이고 절화장이 70-80cm정도로 긴 것이 특색이며, 1997년 자료에 의하면 이 품종이 국내 장미재배의 35.7%를 차지하여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절화장미와 관련한 국내 실태를 살펴보면,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을 중심으로 절화장미의 신품종이 해마다 발표되고 있으나 모두 우리나라의 기후에 맞고 소비자에게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중 극히 일부 품종만이 우수한 품종으로 인정되고 있고, 또한 농가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종만이 선택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최근에 개발된 품종들은 내병성이 강하고 절화수명이 길며 꽃목이 강한 우수한 특성을 가진 품종들이 많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존 품종보다 품질이 우수한 품종들이 다각적으로 도입되어 농가에 보급되고 있다.

나.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활동

농수산물유통공사는 특수법인으로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어민의 소득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화훼류의 판매를 중개하는 화훼공판장을 두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위 화훼공판장에서 화훼농민들이 재배하여 출하한 장미에 대해 경매를 실시하여 왔는데, 그 경매목적물인 장미를 표시함에 있어서 전광판의 품명부분에 한글로 “레드 산드라” “카디날” 등을 표기하여 경매를 실시하여 왔다.

다. 코르데스사의 소(訴) 제기

코르데스사는 1998년 5월 27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매행위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상표권을 침해하는 장미의 취득, 배포 및 판매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품종보호권의 권리가 한국에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표사용료 지불을 요청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레드 산드라 상표권에 대한 상표권등록무효심판 제기

한편, 한국화훼협회는 코르데스사의 등록상표 ‘레드 산드라’에 대해 상표권등록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하여 무효심결을 받아 승소하였으나, 이에 대한 코르데스사의 특허법원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한국화훼협회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 담당재판부는 2002년 11월 26일자로 코르데스사의 등록상표 ‘레드 산드라’는 장미의 보통명칭이므로 그 상표권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확정판결을 내려 한국화훼협회가 최종 승소하였고 사건은 특허법원으로 환송된 상태이다.

2. 코르데스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 간 손해배상청구소송

가. 제1심 및 제2심의 소송쟁점 및 판결 분석

제1심과 제2심의 소송쟁점과 판결 내용을 요약하면 <표 5-1>와 같다. 이를 내용별로 분석하기로 한다.

<표 5-1> 소송쟁점 및 판결

쟁 점	판 결	
	1심	2심
등록상표 ‘레드 산드라’ 등이 보통명칭인가?	보통명칭아니다	보통명칭아니다
전광판에 등록상표의 명칭을 표시하여 경매진행한 행위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가?	해당않는다	해당한다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 판매행위가 불법 행위인가?	-	불법행위이다

1) 상표법상 보통명칭 여부

상표법 제6조는 상표의 절대적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 상표, 즉,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표법 제51조 제2호에서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조항들이 갖는 의미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면, “자동차”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CAR”라는 상표는 자동차의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설사 “CAR”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고 해도 등록권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라는 상품에 대해 CAR라는 상표를 사용하여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침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상표는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제6조를 살펴보면, 제1항에서 “그 상품의 약칭, 속칭, 기타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일반수요자와 거래업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 등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상표심사기준 제6조 제1항의 해석참고자료 제2호에서는 “종자산업법에 의해 등록된 품종명칭 또는 농수산물의 품종으로 거래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그 품종의 종자, 묘목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경우에는 본호를 적용하며...(후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과일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홍옥”, “신고”, “백도”, “거봉”과 곡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팔금”, “농립 6호”의 상표들은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한다고 예시하고 있다.

상기 언급된 법규정을 참고로 하여 1심과 2심에서의 당사자의 주장과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본다.

1심과 2심의 판결을 분석해 보면, ‘레드 산드라’가 종자산업법에 의해 등록된 품종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레드 산드라’가 농산물의 품종으로서 거래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명칭인지의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었을 것이다.

<표 5-2> 보통명칭에 대한 판결

상표심사기준 제6조 제1항에 대한 해석참고자료 제1호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본호에서 규정하는 보통명칭은 당해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일반수요자와 거래업

구 분	제1심 및 2심
코르데스사	당해 장미의 보통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수산물유통공사	코르데스사가 육종개발한 장미의 품종명으로서 당해 장미의 보통명칭에 불과하다.
판 결	등록상표의 명칭이 당해 거래업자 및 일반수요자에게까지 널리 일반적으로 장미의 품종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판단한다.

- 가. 관련 거래업계에서 보통명칭인 동시에 일반수요자에게도 보통명칭인 것은 보통 명칭으로 본다.
- 나. 관련 거래업계에서 보통명칭이지만 일반수요자에게는 보통명칭이 아닌 것도 보통명칭으로 본다.
- 다. 관련 거래업계에서 보통명칭이 아니지만 일반수요자에게는 보통명칭인 것은 보통명칭이 아닌 것으로 본다.“

제1심과 2심에 제출된 증거자료가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갖는지는 별개의 사안으로 하더라도, ‘레드 산드라’는 우리나라에 80년대에 도입되어 현재 시장성이 가장 우수한 절화장미 품종으로 각광받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35.7%를 차지하여 점유율이 가장 높은 품종이라는 점, 국내의 장미시장에서 이미 장미의 한 품종을 뜻하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레드 산드라’가 거래업계에서는 절화장미의 품종을 뜻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는 보통명칭이라고 판단되고, 이에 대한 제1심과 2심의 판결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된다.

2) 경매행위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여부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표지라는 점에서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표의 사용은 상표권의

침해에 관련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상표법 제2조 제1항의 해당 각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표” 및 “상표의 사용”, 동법 제50조의 “상표권의 효력” 및 동법 제66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나. 가목의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 상표법 제50조 :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 상표법 제66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상기 언급된 법규정을 근거하여, 1심과 2심에서의 당사자의 주장과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본다.

<표 5-3> 경매행위에 대한 판결

구 분	1심	2심
코르데스사	화훼농민들로부터 위탁받은 장미를 경매를 통하여 도매함에 있어서 등록상표 “Red Sandra”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인 장미에 표시하여 경매를 진행한 행위는 상표의 사용행위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	경매 시에 등록상표의 한글명칭을 사용한 것은 상표로서의 사용이 아니라 단지 경매를 위해 품종명칭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표의 사용이 아니다	
판 결	피고는 화훼농민들이 생산하여 출하하는 장미의 경매진행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할 뿐 그 경매목적물인 장미는 피고의 상품이 아니므로, 피고가 화훼공판장의 전광판에 경매목적물인 장미의 품명을 특정하기 위하여 등록상표를 표기한 것은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장미의 경매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등록상표를 한글로 기재한 장미를 전시하는 한편, 경매전광판 및 그 거래서류 등에 원고의 등록상표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한다

제2심 판결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장미의 경매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장미라는 상품에 등록상표를 한글로 기재하여 전시하고 경매전광판 및 그 거래서류 등에 등록상표를 기재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행위로 보았는데, 이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의된 상표의 사용에 대한 의미를 충실히 해석하여 적용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반면, 제1심에서의 판결요지는 상표의 사용이란 ①상표의 사용양태에 비추어 볼 때, 표시된 코르데스사의 등록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느냐와 ②상품의 생산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자의 사용이냐 등 상표의 출처표시기능, 상표법의 취지 및 본 사건의 구체적, 개별적 상황에 보다 초점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1심의 판결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경매시 코르테스사의 등록상표를 전광판 등에 표시한 것은 자타상품의 식별을 위해 표시한 것, 즉, 농수산물유통공사 자신의 상품을 표상하기 위하여 코르테스사의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농수산물유통공사는 화훼농민들이 생산하여 출하하는 장미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경매진행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경매서비스의 진행자일 뿐 장미를 생산 판매하는 업자가 아닐 뿐더러 그 경매목적물인 장미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상품이 아니므로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상표의 사용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결과, 내린 판결로 분석된다.

하지만 해당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화훼류를 도매하기 위하여 화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면서 출하자인 재배농민들로부터 절화장미의 경매절차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레드 산드라’의 등록상표를 전광판 및 그 거래서류 등에 한글로 옮겨 기재하는 방법으로 장미의 상품명을 표시하고 전시하였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및 다.목의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비록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장미를 생산·판매하지 않고 출하된 장미의 경매진행 서비스만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해 상표법 소정의 ‘상표사용행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3심 판결 전망

한국화훼협회가 제기한 상표권등록무효심판소송에서 코르테스사의 등록상표 ‘레드 산드라’와 ‘카디날’이 장미의 보통명칭이라는 대법원판결(2002. 11. 26. 대법원 2001 후

2283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담당재판부는 ‘레드 산드라’와 ‘카디날’이 장미시장에서 이미 장미의 한 품종을 뜻하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사용돼 온 만큼 특정상표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화훼거래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화훼협회, 화훼공판장, 화훼관련잡지, 논문 등에서 장미의 한 품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반화된 만큼 등록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앞서 분석한 내용(상표법상 보통명칭 여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레드 산드라’와 ‘카디날’에 대한 상표권무효심결의 확정은 침해행위에 대한 상표권의 효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코르데스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 간 상표권 침해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가압류소송에 상표권무효심결확정이 미칠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상표권무효심결확정의 효과

상기 대법원 판결에 의해 코르데스사의 등록상표 ‘레드 산드라’와 ‘카디날’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된다(상표법 제71조 제3항). 상표권무효심결확정의 효과는 소급효이다. 따라서, 상표권무효심결확정에 의해 ‘레드 산드라’와 ‘카디날’의 상표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므로, 설사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행위가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침해의 대상인 권리의 원천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행위는 상표권의 침해에서 벗어난다. 이러한 논지를 뒷받침할 판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형사(상표) 1996.5.16. 선고 93도839 판결 (발췌) ****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행위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침해되었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

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어느 상표가 등록되면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지만,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고(상표법 제71조제3항), 한편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형사소송법 제420조 제6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행위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침해되었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청구소송 제3심의 판결예측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측의 조치

본건의 손해배상관련 민사소송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의 재판부가 등록상표 ‘레드 산드라’와 ‘카디날’에 대한 상표권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원심(고등법원판결)을 파기하여 고등법원으로 환송할 것이고 고등법원에서는 상표권무효심결확정에 근거하여 원고(코르데스사)의 청구를 일부 인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상표권무효소송과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상표권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본건의 손해배상관련 민사소송건이 계류 중인 대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이를 알려야 할 것이다.

제2절 품종보호권 논점 분석

1.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가. 신품종의 권리범위

품종보호권 설정을 출원한 품종이 등록되면, 출원인은 그때부터 20년(과수, 임목 25년)간 그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갖게 된다. 품종보호권이 성립한 품종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 품종의 육성권자나 전용실시권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권리침해를 제재할 수 있는 임시보호권의 개시는 출원공고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그런데 품종보호권은 권리의 발생 시점 이전에 식재한 품종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장미생산업체 입장에서는 품종보호권 성립 이후 그 품종을 사용할 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지만, 품종보호권 성립 이전에 이미 식재한 품종에는 로열티 지불의 의무가 없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 규정이 의미를 갖는 것은 임시보호권의 발생시기가 현재와 같이 출원공고 시점일 때이다. 이는 출원신청부터 출원공고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기 때문에 권리의 부재기간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종자산업법의 개정안 내용처럼 임시보호권의 발생시점을 출원공개 시점으로 변경하면 새로 개발한 신품종의 경우 권리의 부재기간이 거의 없거나 아주 짧기 때문에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상태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나. 알려진 품종의 권리범위

장미의 품종보호권과 관련하여 당면한 최대현안 중의 하나는 이미 알려진 품종(variety of common knowledge)의 권리화 부분이다. 왜냐하면 현재 장미재배농가들이

재배하고 있는 장미품종 대부분이 이미 알려진 품종들이고, 이 품종들의 품종보호권은 그 개시시기에서 예외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알려진 품종은 그 권리의 발생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이전으로 소급되는데, 특히 알려진 품종 중 외국에서 이미 품종보호권을 획득한 품종이 등록되면, 품종보호권은 그 품종이 국내에 출원시점까지 소급되어 발생한다(종자산업법 제13조의 2).

장미의 경우 이미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 출원시효가 2002년 6월 30일까지로 대부분의 외국품종들이 2002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출원신청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외국의 알려진 품종들이 품종보호권을 획득하게 되면, 2002년도 상반기 출원신청 이후에 무단으로 식재한 품종에 대해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장미 재배농가들은 외국의 육종회사들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출원신청 이전에 이미 식재한 품종은 품종보호권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은 “당해 품종보호출원일 전에 행하여진 실시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즉 품종보호출원일 이전의 품종사용은 품종보호권의 권리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법률적 논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알려진 외국품종이라 하더라도 당해 품종의 출원신청 이전에 이미 식재한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어지는 제13조의2 제4항에는 “품종보호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그 품종보호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실시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품종보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품종보호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법해석상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제3항과 제4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상기 조항의 무게 중심은 제3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입법자는 무엇보다 품종보호출원일 이전에 실시된 행위

는 품종보호권의 권리 박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만 품종보호출원일 이전에 행한 실시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인정하는 경우 통상실시권자는 품종보호권자에게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정당함을 밝히고 있다. 결국 입법취지는 품종보호출원일 이전의 품종사용이 품종보호권 효력 밖의 일이지만, 그러한 사용에 대해 품종사용자의 실시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적절한 수준의 사용료¹⁸를 품종보호권자에게 지불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3항과 제4항의 이러한 내용들이 서로 모순되는 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일관된 법원리로 해석하고 판단하기에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즉 품종보호권은 존재하지 않지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규정이 상호모순되는 내용인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제4항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형태로 법안을 개정해 일관된 법체계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법규의 적용

상기 법률을 적용할 경우, 해당 품종의 품종보호출원일 이전에 그 품종을 식재한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않는다. 품종별로 출원시기에 차이가 있지만, 알려진 장미품종들의 출원시기가 2002년 2월에서 6월 사이이기 때문에 2002년 2월 이전에 식재한 품종은 권리침해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요컨대 알려진 품종의 권리화 주장에서는 품종보호출원일과 해당 품종을 식재한 일자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식재한 날짜에 대한 내용증명에서는 식재한 시점이 품종보호출원일 이전이나 이후냐 하는 것이 핵심사항이다. 식재한 시점이 품종보호출원일 이전이면 기식재 품종에 대한 로열티 지급문제에서 상당부분 벗어날 수 있으며, 적어도 권리침해로 제소되지 않게 된다.

¹⁸ 여기서 상당한 대가 수준으로 표현되는 적절한 사용료 수준은 향후 이러한 내용이 법률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 판결이 내려질 때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품종보호권 하의 통상적인 로열티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농민의 자가채종권

농민의 자가채종권은 UPOV의 1991년 개정협약에 신설되어 국제적으로 일반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종자산업법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종자산업법 제58조 2항에 “농민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을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당해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다시 시행령 제35조에서 “농민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하는 때에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는 당해 농민이 경작하고 있는 포장에 심을 수 있는 최대 종자량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실시 중인 품종에 대해 농민은 자가채종할 수 있으며, 자가채종의 범위는 해당 품종을 경작하던 경작지에 재배할 수 있는 종자량 크기가 된다.

농민의 자가채종권은 품종보호에 대한 지적재산권 체계 내에서 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조항으로 등장한 것이다. 품종보호권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농민의 자가채종 이외에 ①영리 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②실험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③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가 있다(제58조 1항). 하지만 해당 작물의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적용범위가 가장 광범위한 것이 농민의 자가채종인 것이다.

제6장 품종보호 권리화 대응방안

제1절 품종보호정책의 기본방향

2002년 우리나라가 UPOV에 가입함으로써 신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국제 조류에 동참하게 되었다. UPOV 가입에 따라 우리는 품종의 지적재산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보다 체계화해야 하고 품종보호대상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가입후 10년 이내에 전 작물이 품종보호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작물의 품종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은 한편으로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신품종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품종에 대한 시장개방의 성격을 갖는다. 품종에 대한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때, 국내의 품종개발기술이 높다면 종자의 수출 등으로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지만, 그 반대가 되면 종자를 수입하고 그에 따른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품종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제도화가 이러한 양면성을 갖기 때문에 제도를 정립할 때 그 효과와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만 품종의 지적재산권을 일반화하는 전반적인 추세를 부정할 수는 없다. 이는 논리적으로 정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통상관계상으로도 역부족이다. 따라서 UPOV 가입으로 인해 품종보호권이 강화되는 여건을 단순히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즉 국제적인 품종보호제도 도입과 이에 따른 품종시장의 개방을 품종개발을 위한 경쟁체제 도입의 수단으로 파악해 품종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하고, 품종의 로열티가 일종의 기술료임을 명확히 하여 신품종 사용과 로열티 지불을 기술정책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외국의 신기술을 조기에 도입하여 신상품을 앞서 출하하고 상대적인 고가로 국내외 시장을 선점하는 기술정책적 전략을 신품종 도입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종의 품질차이는 기술차이로서 신품종에 대한 로열티가 기술료로 수용되어진다.

우리나라가 UPOV 협정과 WTO의 TRIPs 협상에 동참하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 선협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다거나 말할 수 없다. 문제는 국제적 품종보호 체제 하에서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 출발시점의 여건 자체도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만 아니다. 작물에 따라 품종개발 수준이 낮은 상태에 있는 것도 있지만, 우수한 품종개발로 종자수출이 가능한 품목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고정적인 여건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체제하에서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것이다.

개방적인 신질서 하에서는 무엇보다 정보 및 지식의 교류가 원활하게 된다. UPOV 및 회원국으로부터 획득한 품종 관련 기술 및 정보가 우리의 신품종 개발 및 심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표준화된 신품종 심사기술, 각국의 출원·심사동향, 유전자원 정보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여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외국의 우수한 품종이나 신기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생명공학기술에 의한 양질의 품종을 개발함으로써 농산물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여기서 UPOV 가입으로 인한 효과를 긍정적 형태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갖추어야 선결조건들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조건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품종육성자 권리가 보호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품종보호에 대한 제도를 정착시키고, 품종보호에 지적재산권 강화가 세계적인 조류임을 홍보해 나가야 한다.

둘째, 품종에 대한 경쟁력을 조기에 제고시켜야 한다. UPOV협약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 113개 작물을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하였고 2009년까지 전 작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다. 이에 따른 대상작물의 연차별 지정계획 수립시 작물별 국제경쟁력 수준, 농가에 미치는 영향 등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 현재 품종개발이 활발한 화훼류, 서양채소, 및 사료작물 품종의 경쟁력은 열세에 있다. 이들 품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UPOV 회원국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민, 관, 학, 연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해 신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셋째, 확대 예상작물에 대한 심사기준의 작성이다. 우리나라가 10년 이내에 모든 식

물로 보호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출원하는 품종에 대해 심사를 위한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을 작성해야 한다. 현재 종자산업법에 등재된 대상 작물에 대해서는 특성조사요령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밖의 작물에는 아직 없다. 추가 등재할 작물들에 대한 심사기준의 작성 및 표준품종 설정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UPOV 가입의 효과는, 장미품종 로열티에서처럼, 단기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장과 로열티 시장 개방이 품종개발에 대한 완전경쟁체제를 가동시켜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품종보호정책의 기본방향은 품종시장의 개방에 적극적 대처하여 품종개발의 경쟁체제를 육성함에 그 중점이 놓여져야 할 것이다.

제2절 장미품종의 권리화 대응방안

1. 법률적 대응방안

가. 상표권 대응방안

현재 상표권으로 소송 중인 코르데스사 품종 문제는 ‘레드 산드라’와 ‘카디날’을 제외한 나머지 상표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표가 무효가 된 ‘레드 산드라’와 ‘카디날’을 제외한 나머지 8개의 상표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당초의 약 5,000만원에서 약 430만원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앞으로 품종보호권이 일반화될 것이기 때문에 코르데스사 측도 상표권을 이용한 로열티 권리화를 일반적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는 지적재산권 침해로 언제든지 민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미품종으로 현재 상표등록되어 있는 것은 코르데스사의 품종 32개이고, 다른 외국 육종회사의 품종은 상표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코르데스사의 품종 중에서도 다음 품종은 상표등록이 거절되었다.

- 체리 레이디(Cherry Lady), 서커스(Circus), 달라스(Dallas), 드림(Dream), 코르데스(Cordes), 텍사스(Texas), 판타지아(Fantasia), 비탈(Vital), 림보(Limbo), 스위트 허니(Sweet Honey), 블랙 뷰티(Black Beauty)

그리고 레드 산드라(Red Sandra)와 카디날(Kardinal)은 등록상표가 무효로 되었다. 결국 상표권에 관한 한 코르데스사 품종 이외 타 품종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코르데스사의 품종도 상표권이 없는 품종, 특히 널리 재배되고 있는 ‘레드 산드라’, ‘카디날’, ‘비탈’은 그 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표권이 있는 품종, 즉 코르데스사의 32개 품종에 해당되는 종자를 무단으로 증식하거나 무단증식한 종자를 이용한 자는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코르데스사의 상표권 소송 이후 코르데스 품종을 한국명칭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것처럼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것은 상표권에 관한 한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그 품종이 품종보호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명칭에 상관없이 무단으로 품종을 사용할 수 없다.¹⁹

나. 품종보호권 대응방안

1) 이미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

원칙적으로 품종보호권은 권리의 발생 시점 이전에 식재한 품종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장미생산업체 입장에서는 품종보호권 성립 이후 그 품종을 사용할 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지만, 품종보호권 성립 이전에 이미 식재한 품종에는 로열티 지불의 의무가 없다.

¹⁹ 코르데스사의 품종 중 ‘레드 산드라’는 상표권이 무효로 되고 품종보호 출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품종은 어떠한 지적재산권도 갖고 있지 않다. 즉 품종사용에 대한 로열티 권리와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미 알려진 품종들의 품종보호권은 권리의 발생 시점이 소급된다. 특히 알려진 외국품종들의 품종보호권은 품종보호출원일까지 그 권리가 소급된다. 이미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 출원시효가 2002년 6월 30일까지로 대부분의 외국품종들이 2002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출원신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품종들이 품종보호권을 획득하게 되면, 2002년도 상반기 출원신청 이후에 무단으로 식재한 품종에 대해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품종보호출원일 이전에 알려진 외국품종을 식재한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않는다. 품종별로 출원시기에 차이가 있지만, 가장 앞선 출원신청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02년 2월 이전에 식재한 품종은 권리침해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한마디로 알려진 외국품종의 품종보호권에서는 식재한 시점이 품종보호출원일 이전이냐 이후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식재한 시점이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이면 기식재 품종에 대한 로열티 지급문제에서 상당부분 벗어날 수 있으며, 적어도 권리침해로 제소되지는 않게 된다.

2) 농민의 자가채종권

농민의 자가채종권은 품종보호에 대한 지적재산권 체계 내에서 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조항으로 등장하고 있다. 품종보호권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농민의 자가채종 이외에 ①영리 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②실험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③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가 있다. 하지만 해당 작물의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적용범위가 가장 광범위한 것이 농민의 자가채종이다. 농민의 자가채종 범위는 해당 품종을 경작하던 경작지에 재배할 수 있는 최대 종자량이 된다.

장미생산에 있어서 육성자의 권리에 대하여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농민의 자가채종을 생산자의 권리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실시 중인 품종을 한번 이상 자가채종하게 되면 그만큼 로열티가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줄일 수 있다.²⁰

2. 정책적 대응방안

가.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대응

1) 경성장미원예회사와의 로열티협정 후속문제 처리방안

경성장미원예회사에 지급한 로열티와 관련된 용자금에 대한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첫째, 연대보증인 88명에 대해 미수금을 분할하여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용자계약에 부합하는 내용이고 형평성에도 일단 문제가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불 능력이 없는 농업인들이 상당수 존재해서 미수금을 전액회수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미수금에 대한 일시상환으로 농업인들에게 영농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현재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으로 법적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지급능력이 있는 연대보증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수금을 전액 회수할 가능성이 있지만, 연대보증인 일부에 대한 강제회수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미수금을 수출물류비 지원에서 일괄 지원하는 것이다. 원래 용자금의 회수가 수출물류비 지원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남은 미수금을 이 비목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미수금 발생에서 어느 정도 정책실패가 일어난 점을 인정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하게 된다.

경성장미원예회사와의 로열티 협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외견상으로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장연」 간의 단순 채권채무관계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앞서 실태분석에서 고

20 그런데 최근 들어 개발품종들이 짧은 기간에 새로운 신품종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띠고 있는데, 이를 경우 자가채종이 줄어들어 농민의 자가채종권은 그 의미를 잃을 수 있다.

찰한 바와 같이 상당한 정도의 정책실패가 동반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회수하지 못한 용자잔액에 대해 법적 조치에 의한 강제회수는 해당 농업인 및 관련 농민단체의 반발과 민원을 야기시켜 사회적 이슈로 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될 때 책임소재에 대한 공방이 나타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미수금을 수출물류비 지원에서 일괄 지원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라 판단된다.

2) 기식재 품종의 로열티 협상 중재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이미 알려진 외국품종들이 품종보호권을 획득하게 되면 품종보호권은 품종보호출원일로 소급되어 그 권리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 품종보호출원일 이후에 실시권없이 실시한 재배농가들은 품종보호권자 즉 외국육종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이 때 외국의 육종회사와 생산자 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당국이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 국내 장미재배농가들에게는 종자산업법에 의한 과도기적 경과규정을 설명하고 지적재산권 성립에 의한 로열티 지급의 불가피성을 이해시켜야 한다. 반면에 외국육종회사에게는 권리가 소급되는 예외적 상황인 만큼 민형사상의 소송으로 대처하기보다 합리적인 로열티 협정안을 제시하여 원만한 협약을 성사시키는 것이 한국의 품종시장에서 자사의 품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원만한 협약을 위한 합리적 협정 내용으로 상정할 수 있는 안으로는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이후 기식재한 해당 품종 목본의 재배잔여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로열티 크기를 정하는 것이다. 통상 장미의 재배연수가 약 3.5~4년 정도이므로 식재한지 1년이 지난 것은 정상 로열티의 3/4 수준, 2년이 지난 것은 1/2 수준을 납부토록 하는 협정안이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협정안은 원칙적으로 생산자단체와 관련 육종회사 간에 합의되고 체결되어야 하지만, 생산자단체로 조직되어 있지 않거나 조직이 있더라도 사안에 대해 의견통일을 보지 못할 때 정부가 이러한 타협안이 성립·가능하도록 중재할 필요가 있다.

3) 무단증식품종 절차에 대한 일본의 제재조치 홍보

무단증식품종을 이용한 수확물에 대한 일본의 반입금지조치로 2003년 6월 이후 일본으로 장미를 수출할 때는 반드시 품종보호권에 대한 실시협약을 먼저 체결하여야 한다. 한국산 품종을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당장 반입금지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 경우에도 품종육성자가 일본에서 품종보호권을 획득해 반입금지를 요청하면 반입이 금지된다. 따라서 일본 수출용 장미는 품종보호권의 침해사유에 속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정책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장미재배농가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전에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나. 통상정책적 대응방안

1) 외국의 우수한 신품종을 선진기술로 활용

장미품종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품종의 로열티를 추가적인 비용으로만 파악하는 소극적인 시각을 버리고, 품종이란 어떤 품종을, 어떤 시기에 도입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적극적 요소에 해당하므로 품종의 이용에 소요되는 로열티는 생산적 투자비용에 속한다는 적극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질 때 비로소 외국의 육종회사와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외국의 육종회사들과 상호협력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정부 및 농민들과 외국 회사들 간에 상존해 있는 상호 불신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외국의 육종회사들에게 한국은 검역통관이 가장 어려운 나라라는 인식이 팽배해 그들이 한국에 신품종을 공급하는데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한국은 품종의 지적재산권보다 농민을 최우선시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편견을 갖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장미재배농가들은 외국의 육종회사가 국내 농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품종 이용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는 이러한 상호불신을 해소시키고 올바른 협력관

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장미품종에 대한 적극적인 통상관계를 추진하는 주체는 민간 생산자들이어야 하지만, 이러한 통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은 정책당국이 담당해야 할 일에 속한다. 예를 들어 독일 코르데스사 같은 육종회사는 자사 품종의 상표권 소송으로 우리나라와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적극적 통상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작업, 이러한 일은 정책당국이 담당해야 할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다.

외국 육종회사와의 상호협력관계는 국내의 육종회사와 합작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추진될 수 있다. 일본, 한국, 중국 등의 아시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개발에 있어 국내 육종회사의 개발 컨셉과 외국회사들의 선진 기술이 결합하여 현지시장 지향적 신품종이 개발될 수 있다. 이러한 상품개발전략이 품종시장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2) 수입제재수단으로 품종보호 활용

품종보호를 통상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최근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내에 등록된 보호품종이 외국에서 무단으로 증식되어 그 수확물이 수입되는 경우에 국내 반입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현재 장미의 국내 수입이 아직까지 많지 않은 편이지만, 앞으로 값싼 중국산 장미가 대량으로 수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 품종보호제도는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그런데 수입규제 수단으로 품종보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도적 정비 작업과 외국육종회사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우선 「종자산업법」 상에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수입품에도 해당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관련법인 「관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품종보호권을 침해한 수입물품의 반입을 금지하거나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수입되는 장미의 품종이 대부분의 국내에 등록된 외국회사 품종들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들 회사가 무단증식된 장미의 반입에 대해 금지 요청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이들 회사들의 이해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3) 적정한 로열티 수준 형성

품종보호권이 일반화되는 경우에 거래계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은 로열티 수준이다. 현재 장미품종시장에서 거래되는 로열티는 그 크기가 품종별, 회사별로 큰 차이가 있고 평균적으로도 국제적 수준을 초과하고 있다. 장미품종의 국제적 로열티는 약 0.9 달러(1,100원)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실제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평균 약 1,500원 정도이다. 여기에다 묘목값이 추가되면서 종자비는 1주당 평균 2,500~3,000원이 된다.

국내의 로열티 수준이 국제 수준보다 높은 것은 로열티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국내 생산자단체의 교섭력이 약한 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로열티 수준을 적정화하고 로열티에 동반되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기 위해서는 생산자조직을 강화하여 이 조직이 대외 통상 및 교섭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시장정보를 소속 생산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민간생산자조직의 통상 및 교섭활동을 지원하기 정책당국이 외국의 육종회사들과 직접 교섭하는 활동 또한 필요하다. 정책당국이 품종과 관련된 전반적인 관계 개선을 도모하면서 적정한 로열티 수준과 로열티에 결부된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해 합의를 하고 이 결과를 품종시장에 알리게 되면, 이는 로열티를 실질적으로 낮추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로열비 지급에 동반되는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다. 기술개발에 의한 대응방안

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에서 유래한 분규와 로열티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나라가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때 개발주체는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민간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우수한 품종이 국내에서 개발되더라도 품종보호권이 성립하고 그와 결부된 로열티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 경우 국산품종의 로열티가

일반적으로 외국품종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시되어 육성자와 이용자 간에 로열티로 인한 대립·갈등이 현재와 같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²¹

여기에다 국산 품종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져 어느 정도의 교섭력을 갖게 되면, 낮게 제시되는 국산 품종의 로열티가 로열티시장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외국품종 사용에 의한 외화 유출을 줄이고 수입대체효과를 갖게 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을 유발시킨다. 따라서 우수한 신품종을 개발하는 것은 품종의 로열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안이 된다.

그렇지만 우수한 신품종을 개발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현재 품종개발기술에서 장미를 포함한 화훼류 분야는 기술수준이 낮은 상태에 있다. 장미품종은 원예연구소를 비롯한 국가연구소들과 봉계농산 등의 민간육종회사에서 개발하고 있으나 외국의 저명한 육종회사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해 이곳에서 개발된 품종들을 이용하는 장미 생산자들이 많지 않다.

그리고 품종별로는 스프레이 계통은 부분적인 호응을 받고 있으나,²² 중륜 및 대륜 계통은 호응이 거의 없는 편이다.

우수한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품종 육성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품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에서는 연구개발에서부터 연구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략작목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품종개발을 위한 연구는 다른 어느 연구보다 협동작업이 필요한 분야이다. 왜냐하면 이 분야의 연구는 항상 원품종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원품종을 공유하거나 이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협동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외국의 육종회사와 합작투자 형태의 공동연구가 필요하고 이러한 연구 및 개발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21 실제 국산 품종의 로열티는 외국 품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원예연구소의 경우 개발품종의 로열티는 품종 개발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산정된다.

22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예연구소에서 개발한 스프레이 계통의 ‘핑크 레이디’가 (주)로즈피아에서 생산되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 소재한 외국의 육종회사 및 그 자회사에 연구개발은 기술이전 및 과
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품종개발에서는 민·관·
학·연의 협동연구가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협동연구체제가 구축되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제7장 요약 및 정책적 제언

WTO 무역협상에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이 다자간 무역협상의 대상이 됨으로써 지적재산권의 국제화가 크게 진전되었다. 여기서 작물종자의 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도 보호받게 되었고 개별국가들은 이를 위한 제도 정비와 실천적 이행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 우리나라는 1995년 「종자산업법」을 제정해 품종보호제도를 정비하였고, 2002년에는 품종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하게 되었다. UPOV 가입에 따라 우리나라는 품종의 지적재산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보다 체계화해야 하고 품종보호대상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가입후 10년 이내에 전 작물이 품종보호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작물의 품종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은 한편으로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신품종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품종에 대한 시장개방의 성격을 갖는다. 품종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제도화가 이러한 양면성을 갖기 때문에 품종보호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 그 효과와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종보호정책의 기본방향은 국제적인 품종보호제도 수립과 이에 따른 품종시장의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품종시장의 개방을 품종개발을 위한 경쟁체제 도입의 수단으로 파악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품종의 로열티를 일종의 기술료로 파악하는 기술정책적 관점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개방체제하에서 외국의 우수한 품종이나 신기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생명공학기술에 의한 양질의 품종을 개발함으로써 종자 및 농산물을 수출하는 적극적인 경쟁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은 장미품종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2003년 이후 장미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이 일반화되면 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확립되고 품종개발의 경쟁체제가 가동되어야 한다.

그런데 장미품종에는 품종보호권 성립 이전에 품종의 로열티와 관련된 현안들이 있

는데, 이 문제들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리고 품종보호권이 성립함으로써 과도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 또한 정상적인 품종보호제도 정착에 기초가 되는 적절한 로열티 수준과 로열티에 동반되는 서비스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적절한 방안 제시와 함께 어떠한 정책적 수단이 동반되어야 하는가를 밝히고 있다.

먼저 한때 장미품종 관련 현안으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독일 코르데스사의 상표손해배상청구소송은 그 사이 상표가 무효된 ‘레드 산드라’와 ‘카디날’을 제외한 나머지 상표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 품종보호권이 일반화 되면 상표권을 이용한 로열티 청구는 줄어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는 지적재산권 침해로 언제든지 민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미품종으로 현재 상표등록되어 있는 것은 코르데스사의 품종 32개이고, 다른 외국 육종회사의 품종은 상표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등록된 상표에 대한 권리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현안은 일본의 경성장미원예회사에 지급할 로열티 8억 8,000만원을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장미재배농가들(한장연)에게 용자형식으로 선납했으나 약 50% 정도만 회수하고 미수금이 발생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외견상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장연」 간의 단순 채권채무관계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정책실패가 동반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회수하지 못한 용자잔액에 대해 법적 조치에 의한 강제회수는 해당 농업인 및 관련 단체의 반발을 일으켜 사회적 이슈로 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될 때 책임소재에 대한 공방이 나타날 수 있다. 원래 용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 수출물류비 지원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남은 미수금을 수출물류비 지원에서 일괄 지원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라 판단된다.

세 번째 현안은 무단증식한 품종을 이용하여 생산한 절화장미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 2003년 6월부터 일본에서의 반입이 금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본 수출용 장미를 생산하는 농가는 품종보호권의 침해사유에 속하지 않도록 로열티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책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장미재배농가들에게 적극적으로 통지하

여 사전에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당면할 현안으로 알려진 외국품종들의 품종보호권이 성립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과도기적 문제가 있다. 「종자산업법」에서는 과도기적 규정으로 이미 알려진 외국품종들이 품종보호권을 획득하게 되면 품종보호권은 품종보호출원일로 소급되어 그 권리가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장미의 경우 이미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 출원시효가 2002년 6월 30일까지로 대부분의 외국품종들이 2002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출원신청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외국의 알려진 품종들이 품종보호권을 획득하게 되면, 2002년도 상반기 출원신청 이후에 무단으로 식재한 품종에 대해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출원신청 이전에 이미 식재한 품종은 품종보호권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해 알려진 품종의 권리 주장에서는 품종보호출원일과 해당 품종을 식재한 일자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식재한 시점이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이면 기식재 품종은 품종보호권의 침해대상이 되지 않는다. 결국 식재한 시점에 대한 내용증명이 권리침해 여부를 결정짓는 결정적 잣대가 될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알려진 품종의 식재시점이 품종보호출원일 이후이면 무단으로 식재한 품종에 대해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장미재배농가들은 외국의 육종회사들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이 때 외국의 육종회사와 장미재배농가 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당국이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 원만한 협약을 위한 합리적 협정 내용으로 상정할 수 있는 안으로는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이후 기식재한 해당 품종 목본의 재배잔여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로열티 크기를 정하는 것이다. 통상 장미의 재배연수가 3.5~4년 정도이므로 식재한지 1년이 지난 것은 정상 로열티의 3/4 수준, 2년이 지난 것은 1/2 수준을 납부토록 하는 협정안이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협정안은 원칙적으로 생산자단체와 관련 육종회사 간에 합의되고 체결되어야 하지만, 생산자단체가 조직되어 있지 않거나 조직되어 있더라도 조직력이 미약해 사안에 대해 공동대처할 수 없을 때는 정부가 이러한 타협안이 성립·가능하도록 중재할 필요가 있다.

품종보호권이 일반화되는 경우에 품종의 로열티 시장을 건전한 형태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로열티 수준을 적정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재 장미품종거래에서 결정되는 로열티는 그 크기가 품종별 다르게 나타나고 평균적으로 국제적 수준보다 높은 상태이다. 그리고 로열티 지급에 동반되는 서비스가 부족한 편이다. 국내의 로열티 수준이 국제 수준보다 높은 것은 로열티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국내 생산자 단체의 교섭력이 약한 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로열티 수준을 적정화하고 로열티에 동반되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기 위해서는 생산자조직을 강화하여 이 조직이 대외 통상 및 교섭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시장정보를 소속 생산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생산자조직이 외국의 육종회사들과 품종과 관련된 전반적인 관계 개선을 도모하면서 적정한 로열티 수준과 로열티에 결부된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해 합의를 하고 이 결과를 생산자들에게 알리게 되면, 이는 로열티를 실질적으로 낮추고 로열티 지급에 동반되는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기여할 수 있다.

국내에서 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그 권리행사를 규율·관리하는 제도가 「종자산업법」이다. 이 법의 내용 중에 품종의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하여 제도적 개선 내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국가품종목록제도의 확대시행이다.

국가품종목록제도는 종자의 품종성능을 관리하기 위하여 중요한 작물종자는 품종보호와 별도로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등재대상작물은 동 법 제114조에서 정한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로 하고 있는데, 현재 대통령령이 정한 작물이 없기 때문에 5개 작물로 한정되어 있다. 성능심사의 주요 기준은 수량성과 품질, 내병충성, 내재해성 등이고, 최소 2년 이상의 재배시험을 통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와 연관이 있는 외국의 제도로는 독일의 품종허가제(Sortenzulassung)가 있다. 독일의 품종허가는 농작물 및 채소 품종이 상업용 판매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사제도인데, 그 목적이 고품질의 종자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질높은 농산물 공급에 기여하는데 있다. 독일의 품종허가에서 주요한 기준은 신품종이 기존에

허가된 품종에 비해 경작가치상의 분명한 개선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수확의 증가나 부산물의 가치증가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경작성, 저항성, 수확성, 질적 우수성 및 응용성 등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국가품종목록제도에서는 그 대상을 기존의 5개 작물에서 전 식물종자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품종보호 및 관리제도는 품종보호등록과 국가품종목록으로 이원화되는데, 품종보호등록이 신품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중점이 주어지는 반면, 국가품종보호는 보호품종 중에서 고품질의 종자만 거래되게 함으로써 양질의 농작물 공급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국가품종목록제도의 확대시행은 품종의 로열티 시장을 규율하는 또 하나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성준. 1996. 「WTO법의 형성과 전망」
- 농림부. 2002. 「종자산업법령」
- 대법원(제1부). 2002. 11. 26일자 판결 [2001후2283 등록무효(상)]
- 대법원(제1부). 2002. 11. 26일자 판결 [2001후2290 등록무효(상)]
- 박현태 외. 2001. 「21세기 종자산업의 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2001-19.
- 서울고등법원(제4민사부). 2001. 12. 19일자 판결문 [2000나42078 손해배상(기)]
- 서울고등법원(제4민사부). 2001. 12. 19일자 판결문 [2000나42085 가압류의의]
- 서울지방법원(제12민사부). 2000. 7. 14일자 판결문 [99가합103123 손해배상(기)]
- 서울지방법원(제12민사부). 2000. 7. 14일자 판결문 [99카합3651 가압류의의]
- 안병규 2003. “세계의 식물 신품종보호 동향과 우리나라의 품종보호제도”. 「국제식량농업」. 제45권 제3호.
- 윤미경·최윤희. 2002. 「DDA TRIPS 분야의 유전자원 관련 논의와 한국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두순 외. 1998. 「절화 생산농가의 경영실태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389.
- 이두순 외. 1999. 「식물 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99-17.
- 장호민 외. 2001. 「한국 자생식물 유전자원 보호·관리를 위한 국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학기술부.
- 종자관리소. 2000. “알기 쉽게 해설한 식물 신품종보호제도.” 「종자」 19.
- _____. 2001.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종자」 21.
- _____. 2001. “UPOV '91협약 및 종자산업법.” 「종자」 22.
- _____. <http://www.seed.go.kr> /
- 특허법원(제3부). 2001. 6. 28일자 판결문 [2000허3869 등록무효(상)]
- 특허법원(제3부). 2001. 6. 28일자 판결문 [2000허3876 등록무효(상)]
- 한국종자협회. <http://www.kosaseed.or.kr/>

Bundessortenamt. 2001. Das BSA stellt sich vor

Bundessortenamt. Portarit

UPOV. <http://www.upov.int/>

W. Kordes Söhne. Rund um Rosen

W. Kordes Söhne. 1990. Schnittrosen-Kultur im Gewächshaus

W. Kordes Söhne. 2003. Kordes-Schnittrosenkatalog

W. Kordes Söhne. 2002. Rosen 2002/03

W. Kordes Söhne. 2003. License fees

日本農林水産省. 2003. 「種苗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関係資料」

日本農林水産省. 2003. 「種苗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参考資料」

日本農村文化社, 「日本フラワービジネス年鑑」, 2000.

부록 I. 일본의 품종보호권 개정

1. 종묘법 개정안 개요

2003년 4월
농림수산성 생산국

I. 취지

식물의 신품종의 육성자권 침해가 최근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그 권리의 보호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종묘를 이용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수확물에 대한 권리침해를 벌칙 대상으로 하는 동시에, 법인에 의한 권리침해에 대해서 벌칙을 강화한다.

※ 육성자권 = 등록된 식물의 신품종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 이 경우의 이용이라는 것은 ① 종묘의 생산, 판매, 수출입 등, ② 수확물의 생산, 판매, 수출입 등이다.

II. 개요

1. 벌칙 대상범위의 확대(제56조 관계)

식물의 신품종 수확물의 이용으로 권리침해가 증가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수확물단계에서 권리의 충분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육성자권의 침해에 대한 벌칙대상을 종묘에 대해 권리침해를 한 자에 더해 수확물에 대해서 권리침해를 한 자까지로 확대한다.

2. 법인에 의한 육성자권 침해에 대해 벌금액의 인상(제60조 관계)

법인에 의한 대규모 육성자권의 침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서 육성자권의 침해에 대한 벌칙에 대해 충분한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 벌금액의 상한을 300만엔에서 1억엔으로 인상한다.

3. 시행기일(부칙관계)

공포일에서 기산하여 2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

[참고] 육성자권 침해물품의 조치 강화

육성자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조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육성자권 침해물품을 수입 금제품으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세정율법의 개정안이 3월 28일에 성립하여 4월 1일에 시행되고 있다.

제156회 국회
2003년 2월

종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관계자료

(농림수산성)

가. 종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나. 종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제안 이유설명

다. 종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요강

라. 종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친구대조조문

마. 종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참조조문

가. 종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종묘법(1998년 법률 제83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56조 다음의 각호의 어딘가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조 제4항 제1호에 드는 행위를 한 육성자권 또는 전용이용권을 침해한 자
- 2 육성자권 또는 전용이용권의 침해 행위를 조성한 종묘를 이용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수확물을 육성자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업으로서 생산하며 양도 또는 대도 신청을 하며, 양도, 대도, 수출, 수입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목적을 가지고 보관한 자

제58조 중 '1에'를 '어딘가에'로, '20만엔'을 '50만엔'으로 고친다.

제59조 중 '1에'를 '어딘가에'로, '10만엔'을 '30만엔'으로 고친다.

제60조 중 '제56조에서 제58조까지 또는 전조 제1호 또는 제3호'를 '다음의 각호에 드는 규정'에 '또는 사람에게'를 '에 대해서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벌금형을 그 사람에게'로 고치며, 동조에 다음의 각호를 더한다.

1. 제56조 1억엔 이하의 벌금형
2. 제57조 제58조 또는 전조 제1호 또는 제3호 각본조의 벌금형

<부 칙>

이 법률은 공포 날부터 기산하여 2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유>

최근에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침해 상황에 비추어 그 권리보호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종묘를 이용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수확물에 대한 권리침해를 벌칙의 대상으로 하는 동시에, 법인에 의한 권리침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의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 법률안을 제출하는 이유이다.

나. 종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제안 이유설명

종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그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현행 종묘법은 종묘가 농림수산물 생산에 불가결한 기초적 생산자재인 것에 비추어, 우량한 신품종의 육성진흥과 종묘의 유통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품종등록에 관한 제도 및 지정종묘의 표시에 관한 제도 및 지정종묘 표시에 관한 규제 등에 대해서 정한 것이다.

특히, 품종등록제도는 식물 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의 내용에 대응한 제도이며, 1978년의 제도발족에서 현재까지 신품종의 출원건수, 등록건수 모두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어 일본의 육종진흥에 큰 역할을 도모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등록된 신품종 종묘가 권리자에게 무단으로 이용되어, 이 수확물이 시장에 출하되는 것으로 식물의 신품종의 육성자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색있는 품종으로 산지형성에 대책하여 온 농업인, 산지 등으로의 영향도 현재화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또, 작년 7월 3일에 결정된 지적 재산전략대강 및 작년 제55회 국회에서 성립된 지적 재산기본법에서는 일본이 지적재산을 전략적으로 창조, 보호 및 활용하는 것으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활력있는 경제사회의 실현을 도모하는 지적재산입국을 지향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최근에 식물 신품종의 육성자의 권리침해 상황 및 일본 지적재산입국 방향성에 비추어, 육성자권의 보호강화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 법률안을 제출한 것이다.

다음으로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다.

첫째로 벌칙 대상범위의 확대이다. 현재, 종묘에 대해서 육성자권을 침해한 자를 벌칙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 대상을 확대하여 종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수확물에 대해서 육성자권을 침해한 자를 벌칙의 대상에 추가하고 있다.

둘째로 법인에 의한 육성자권의 침해에 대한 벌금액의 인상이다. 현재, 육성자권을 침해한 개인에 대해서는 삼년이하의 징역 또는 삼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 대해서는 삼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법인에 의한 육성자권의 침해에 대한 벌금을 일억엔 이하의 벌금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셋째로 지정종묘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의 법정형의 최고액 인상이다. 기존, 지정종묘에 대한 표시의무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십만원 이하의 벌금을, 종묘업자의 신고의무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십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있던 것을 전자에 대해서는 오십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후자에 대해서는 삼십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강화하고 있다. 이상이 이 법률안 제안의 이유 및 주요 내용이다.

다. 종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요강

제1 종묘를 이용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수확물에 대해서 육성자권 또는 전용이용권(이하 ‘육성자권 등’이라고 한다)을 침해한 자를 벌칙 대상으로 추가할 것.(제56조 관계)

제2 법인에 의한 육성자권 등 침해에 대한 벌칙을 1억엔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할 것.(제60조 관계)

제3 지정종묘에 대한 표시의무 등 위반행위 및 종묘업자의 신고의무 등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전자에 대해서 오십만원 이하의 벌금에, 후자에 대해 삼십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강화할 것.(제58조 제59조 관계)

제4 이 법률은 공포 일부부터 기산하여 이십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것.

(부칙 관계)

□ 종묘법의 개정에 대해서

배 경

- 식물의 신품종의 육성자권 침해가 최근 증대
- ↓
- 특색있는 산지형성에 힘쓰고 있는 농업인, 산지 등으로의 영향이 현 재화
- ↓
- 식물의 신품종 육성자권의 충분한 보호를 도모할 필요

골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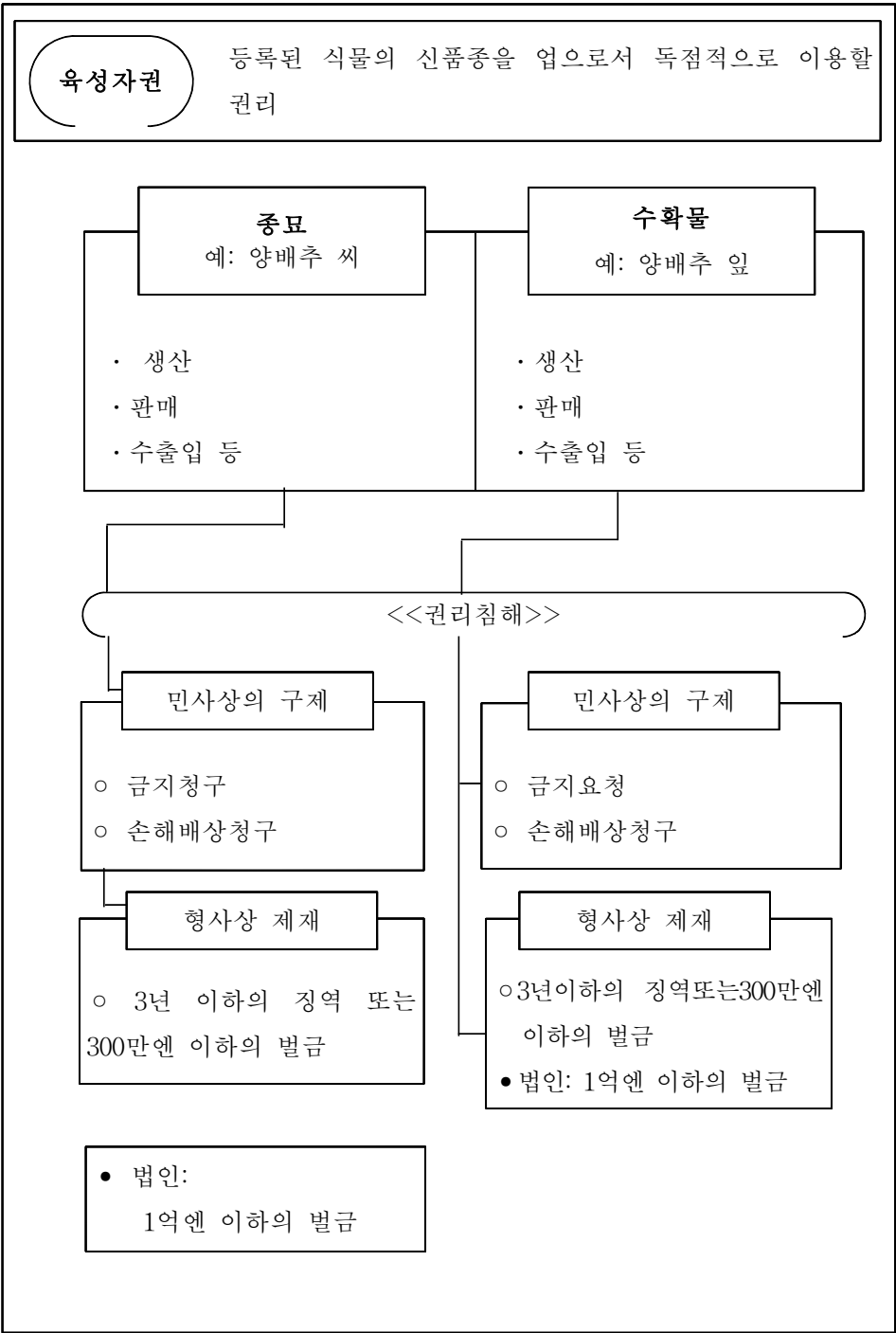
① 벌칙 대상범위의 확대

육성자권 침해에 대해 벌칙 대상자를 종묘단계에서의 권리침해에 더해, 수확물단계에서의 권리침해까지 확대

② 법인에 의한 육성자권 침해에 대해
벌금액의 인상

법인에 대해 벌금액의 상한을 300만엔에서 1억엔으로 인상





라. 종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신구대조조문

종묘법(1998년 법률 제83호) (밑줄부분은 개정부분)

개 정 안	현 행
<p><u>제56조</u> 다음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一 제2조 제4항 제1호에서 드는 행위를 한 육성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을 침해한 자</p> <p>二 육성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의 침해행위를 조성한 종묘를 이용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수확물을 육성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얻으로서 생산하며, 양도 또는 대도 신청을 하며, 양도, 대도, 수출, 수입,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보관한 자</p>	<p>제56조 제2조 제4항 제1호에서 든 행위를 하는 육성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을 침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58조 다음의 각호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一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으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허위표시를 한 지정종묘를 판매한 자</p> <p>二 제5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에 위반하여 지정종묘를 판매한 자</p>	<p>제58조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一 제50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허위표시를 한 지정종묘를 판매한 자.</p> <p>二 제5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에 위반하여 지정종묘를 판매한 자</p>
<p>제59조 다음 각호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을 하지 않고, 또는 허위의 제출을 한 자</p> <p>二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제53조 제1항 또는 제53조의 1 제1항의 集取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三 제54조 규정에 의해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않고, 또는 허위 보고를 하며,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p>	<p>제59조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을 하지 않고, 또는 허위 제출을 한 자</p> <p>二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제53조 제1항 또는 제53조의 2 제1항의 集取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三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않고, 또는 허위 보고를 하며,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p>
<p>제60조 법인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외 다른 종업인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해서 다음의 각호에서 든 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때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 그 법인에 대해서 해당각호에서 정하는 벌금형을, 그 사람에 대해서 각본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p> <p>1 제56조 1억엔이하의 벌금형</p> <p>2 제57조 제58조 도는 전조 제1호 또는 제3호 각본조의 벌금형</p>	<p>제60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외 종업인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해서 제56조에서 제58조까지 또는 전조 제1 또는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 각본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p>

마. 종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참조조문

◎ 종묘법(1998년 법률 제83호)

(정의 등)

제2조 (1 생략)

2 이 법률에서 '품종'이라는 것은 중요한 형질에 관한 특성(이하 간단히 '특성'이라고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따라 다른 식물체의 집합과 구별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특성의 전부를 보지하며, 번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식물체의 집합을 말한다.

3 이 법률에서 '종묘'라는 것은 식물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번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4 이 법률에서 품종에 대해서 '이용'이라는 것은 다음에서 드는 행위를 말한다.

一 그 품종의 종묘를 생산, 조정하여 양도 신청을 하며, 양도, 수출, 수입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二 이 품종의 종묘를 이용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수확물을 생산, 양도 또는 대도의 신청을 하며, 양도, 대도, 수출, 수입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육성자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가 전호에서 드는 행위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적당한 기회가 없었던 경우에 한한다)

5 이 법률에서 '지정종묘'라는 것은 종묘(임업용으로 제공되는 수목의 종묘를 제외) 가운데 종자, 포자, 줄기, 뿌리, 모, 묘목, 소목, 태목, 종균 외 정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품질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판매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농림수산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육성자권의 발생 및 존속기간)

제19조 육성자권은 품종등록으로 발생한다

(육성자권의 효력)

제20조 육성자권자는 품종등록을 받은 품종(이하 '등록품종'이라고 한다) 및 해당 등록품종과 특성에 따라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품종을 업으로 이용할 권리를 전유한다. 단, 이 육성자권에 대해서 전용이용권을 설정한 때는 전용이용권자가 이러한 품종을 이용할 권리를 전유하는 범위에 대한 이 제한은 없다.

(전용이용권)

제25조 육성자권자는 이 육성자권에 대해서 전용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전용이용권자는 설정행위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업으로서 그 등록품종 등을 이용할 권리를 전유한다.

3~5 생략

(종묘업자의 제출)

제49조 종묘업자는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한 부분에 따라 다음에서 든 사항을 농림수산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종묘업자에 대해서는 이 제한은 없다.

- 一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二 취급 지정종묘의 종류
- 三 기타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한 사항

2 전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발생한 때도 또, 동항과 마찬가지로 한다.

3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은 새롭게 영업을 개시한 경우는 그 개시 후 2주간 이내에, 제1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변경이 발생한 후 2주간 이내에 이것을 해야 한다.

(지정종묘에 대한 표시)

제50조 지정종묘는 그 포장에서 다음에 든 사항을 표시한 것 또는 해당사항을 표시하

는 증표를 첨부한 것이 아니면 판매해서는 안된다. 단, 게시 외 쉬운 방법으로 그 지정
종묘에 대해서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및 제6호에서 든 사항을 표시하는 경우는 종묘업
자 이외의 자가 판매하는 경우에 이 제한은 없다.

- ① 표시를 한 종묘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② 종류 및 품종(접목한 묘목에 있어서는 수목 및 태목의 종류 및 품종)
- ③ 생산지
- ④ 종자에 대해서는 채종 년월 또는 유효기한 및 발아율
- ⑤ 수량
- ⑥ 기타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한 사항

2 전항 제3호에서 든 생산지 표시는 국내산의 것에 대해서는 해당 생산지가 속하는
도도부현명으로, 외국산의 것에 대해서는 해당생산지가 속하는 국명으로 이것을 해
야 한다.

3·4 생략

(지정종묘에 대한 명령)

제51조 농림수산장관은 전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종묘업자에 대해서 동
조 제1항 각호에 든 사항을 표시하며, 또는 해당사항의 표시를 변경한다는 취
지를 명하며, 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한 지정종묘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장관은 전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받은 종묘업자가 그 권고를 따르
지 않은 때는 해당 종묘업자에 대해서 기한을 정해서 동조 제3항의 기준을 준수해
야 한다는 것을 명할 수 있다.

(지정종묘의 集取)

제53조 농림수산장관은 그 직원에게 종묘업자로부터 검사를 위해 필요한 수량의 지
정종묘를 집취시킬 수 있다. 단, 시가에 따른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2 생략

(종묘관리센터 또는 가축개량센터에 의한 지정종묘의 집취)

제53조의 2 농림수산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종묘관리센터 또는 독립행정법인가축개량센터(이하 '가축개량센터'라고 한다)에 종묘업자로부터 검사를 위해 필요한 수량의 지정종묘를 집취시킬 수 있다. 단, 시가에 따라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2~4 생략

(보고의 정수 등)

제54조 농림수산장관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종묘업자에 대해 그 업무에 관해 필요한 보고를 명하며, 또는 장부 외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다.

2. 관세정률법 개정안 개요

2003년 2월

재무성

1. 특혜관세제도의 개정

개도국, 특히 LDC(후발개도국)으로의 한층 지원을 도모하는 등의 관점에서 농수산품을 중심으로 한 특혜대상품목 확대 등을 실시한다.

- (1) LDC에 대한 무세품목의 확대(198품목: LDC특혜대상품목의 신규추가 102품목(새우 등) + 일반특혜대상품목의 신규추가 96품목(야자유 등))
- (2) 일반특혜대상품목의 확대(119품목: 일반특혜대상품목의 신규추가 96품목+ 기존의 LDC특혜대상품목의 일반특혜화 23품목(아보카드 등))
- (3) 일반특혜세율의 인하 등(67품목(인스턴트 티 등))

2. 잠정세율의 적용기한 연장 등

- (1) 잠정세율(약420품목)의 적용기한을 2003년도 말까지로 연장한다.
- (2)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관세화된 농산품(전분, 버터 등)에 관한 특별긴급관세 및 쇠고기, 돼지고기에 관한 관세의 긴급조치 적용기한을 2003년도 말까지로 연장한다.
- (3) 가공용 수입 감세제도의 대상품목에 혁제신발 갑을 추가한다.

3. 지적 재산권 침해물품에 관한 조치의 강화

- (1) 육성자권 침해물품을 수입금지품에 추가하여, 수입차금지신청제도의 대상으로 한다.

- (2) 특허권, 의장권 침해물품에 대해서 상표권, 저작권 등 침해물품과 마찬가지로 수입금지신청 제도의 대상으로 하며,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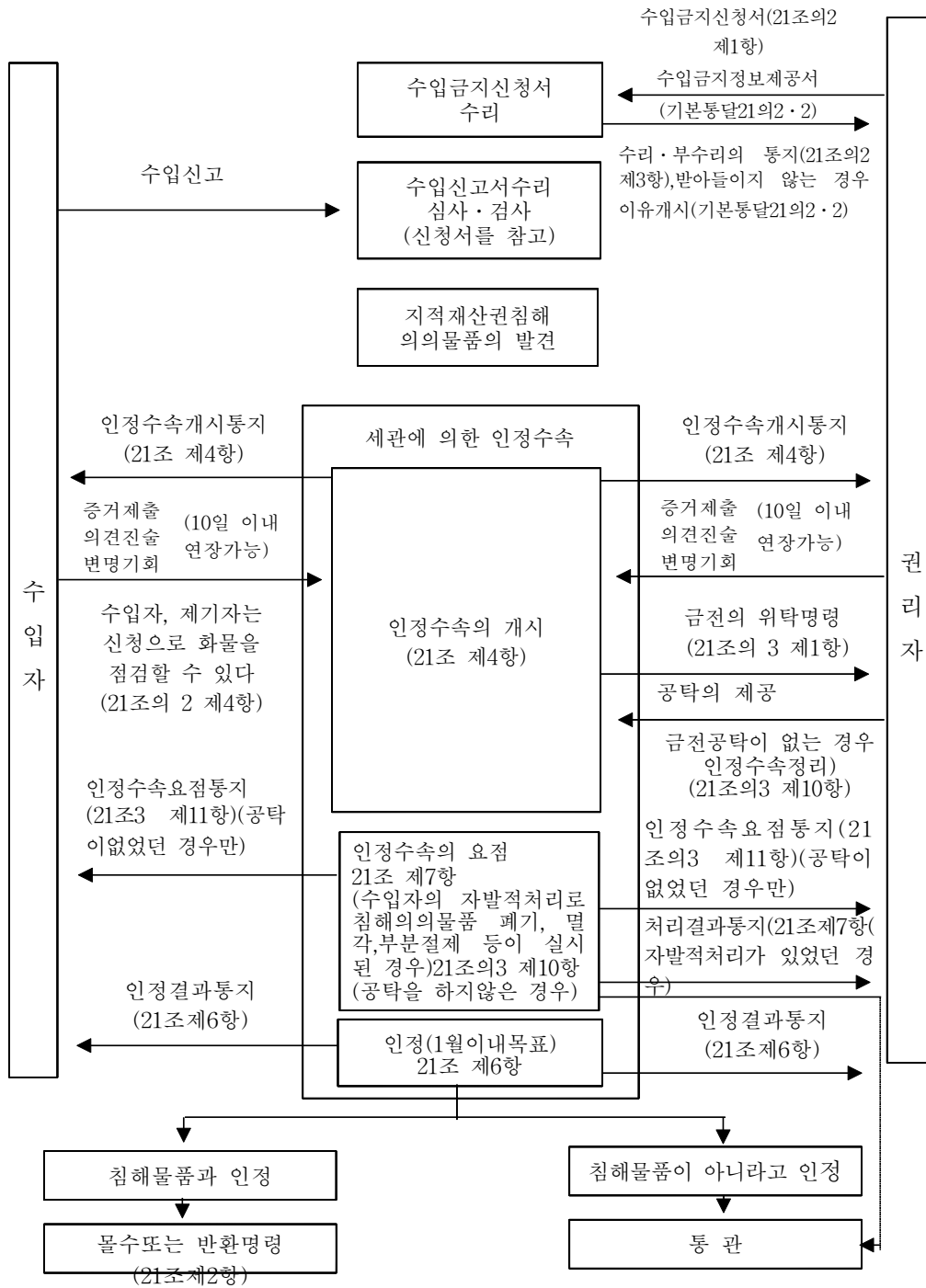
4. 통관의 한층 효율화를 위한 대응

- (1) 간편한 신고제도에 대해서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소요의 개선을 실시한다.
- (2) 최근 국제물류의 효율화 요청을 바탕으로 비거주자의 本邦에서 재고관리 등에 도움이 되도록 소요규정을 정비한다.

개 정 안	현 행
<p>관세정율법(1911년 법률 제54호) (수입금지품) 제21조 다음에 드는 화물은 수입해서는 안된다 一~四 (생략) 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권인접권, 회로배치이용권 또는 육성자권을 침해하는 물품 2 및 3(생략)</p>	<p>관세정율법(1911년 법률 제54호) (수입금지품) 제21조 다음에서 드는 화물은 수입해서는 안된다. 一~四 佐同 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권인접권 또는 회로배치이용권을 침해하는 물품 2 및 3 佐同</p>
<p>4 관세장은 관세법 제6장에서 정하는 부분에 따라 수입하고자 하는 화물 가운데에서 제1항 제5호에 드는 화물에 해당하는 화물이 있다고 사료될 때는 정령에서 정하는 부분에 따라 해당 화물이 동호에서 드는 화물에 해당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인정하기 위한 수속(이하 이 조에서 제21조의 5까지에서 '인정수속'이라고 한다)을 해야 한다. 이 경우에 관세장은 정령에서 정하는 부분에 따라 해당 화물에 관한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의장권자, 상표권자, 저작권자, 저작권인접권자, 회로배치이용권자 또는 육성자권자 및 해당화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해당화물에 대해 인정수속을 하는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5 (생략)</p>	<p>4 관세장은 관세법 제6장에서 정하는 부분에 따라 수입하고자 하는 화물 가운데에서 제1항 제5호에 드는 화물에 해당하는 화물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는 정령에서 정하는 부분에 따라 해당화물이 동호에서 드는 화물에 해당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인정하기 위한 수속(이하 이 조에서 제21조의 3까지에서 '인정수속'이라고 한다)을 해야한다. 이 경우에 관세장은 정령에서 정하는 부분에 따라 해당 화물에 관한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의장권자, 상표권자, 저작권자, 저작권인접권자 또는 회로배치이용권자 및 해당 화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해당 화물에 대해 인정수속을 하는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5 佐同</p>

개 정 안	현 행
<p>6 관세장은 제4항의 인정수속이 된 화물(차항에서 ‘疑義화물’이라고 한다)이 제1항 제5호에 든 화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는 각각의 취지 및 그 이유를 해당인정이 된 화물에 관한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의장권자, 상표권자,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회로배치이용권자 또는 육성자권자 및 해당인정이 된 화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차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한 경우는 이 제한은 없다.</p>	<p>6 관세장은 제4항의 인정수속을 한 화물(차항에서 ‘의의화물’이라고 한다)이 제1항 제5호에 든 화물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때, 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는 각각의 취지 및 그 이유를 해당인정이 된 화물에 관한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의장권자, 상표권자,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회로배치이용권자 및 해당인정이 된 화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차항의 규정에 의해 통지를 한 경우는 이 제한은 없다.</p>
<p>7 관세장은 전항문 또는 규정에 의한 疑義화물에 관한 인정 통지를 하기 전에 다음의 각호에 드는 경우의 어느 것에 해당하게 된 때는 해당 疑義화물에 관한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의장권자, 상표권자,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회로배치이용권자 또는 육성자권자에 대해 그 취지를 통지하는 동시에 제4항의 인정수속을 그만두는 것으로 한다. 1~4 생략</p>	<p>7 관세장은 전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疑義화물에 관한 인정통지를 하기 전에 다음의 각호에 드는 경우의 어느쪽에 해당하는 것이 된 경우는 해당 疑義화물에 관한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의장권자, 상표권자,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회로배치이용권자에 대해 그 뜻을 통지하는 동시에 제4항의 인정수속을 그만두는 것으로 한다. 1~4 생략</p>
<p>(수입금제품에 관한 주장 수속 등) 제21조의 2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의장권자, 상표권자,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육성권자는 자기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또는 육성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화물에 관해 정령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세관장에 대해 그 침해사실을 疎明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며, 해당화물의 관세법 제6장에서 정한 부분에 따라 수입되도록 하는 경우는 해당화물에 대해 전조 제4항의 인정수속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2~4 생략</p>	<p>(수입금제품에 관한 주장 수속 등) 제21조의 2 상표권자,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화물에 관해 정령에서 정하는 부분에 따라 세관장에 대해 그 침해사실을 疎明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며, 해당화물이 관세법 제6장에서 정하는 부분에 따라 수입되도록 하는 경우는 해당화물에 대해서 전조 제4항의 인정수속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2~4 생략</p>
<p>(주장에 관한 공탁 등) 제21조의 3 생략 2 생략 3 전2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은 국책, 지방책 외 유가증권(사채 등의 振替에 관한 법률(2001년 법률 제75호)제129조 제1항(대체사채 등의 공탁)에서 규정하는 대체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의 5에서 같음)에서 세관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4~11 생략</p>	<p>(주장에 관한 공탁 등) 제21조의 3 좌동 2 좌동 3 전2항의 규정으로 공탁하는 금전은 지방책 외 유가증권에서 세관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4~11 생략</p>

5. 인정수속의 개요 프로차트



부록 II. 독일 코르테스사의 품종개발 과정 및 로열티 수준

1. 품종개발 과정

(2003년 2월 독일 코르테스사를 방문하여 담당자의 안내로 코르테스사의 품종개발 시설과 작업과정을 시찰함)

- 신품종이 개발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장미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적게 걸리는 것이 3~4년, 중간이 5년, 가장 길게 걸리는 것은 7~8년이 소요됨.
- 신품종 개발과정
 - 이른 아침 장미꽃에서 봉오리가 반쯤 열려 있을 때, 꽃잎과 꽃가루주머니를 떼어냄.
 - 약 2,000개의 선발된 접붙임식물에 인공수정을 하는데, 5월초에서 6월말까지 매년 80,000개의 장미꽃이 손으로 수정됨.
 - 인공수정은 면밀히 준비된 사전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수정후 개별 꽃에 명찰을 붙여 수술이 어디에서 유래한 지를 표시함.
 - 수정의 첫 번째 결과물은 10월말 경에 수확되는 약 45,000개의 장미열매로 나타남.
 - 장미열매에서 얻은 씨앗을 1,300m² 면적의 유리하우스 땅에 손으로 뿌림.
 - 다음해 2월부터 새싹이 나오고 4월에 처음으로 꽃을 피우게 됨.
 - 꽃이 생긴 이후부터는 세심한 선발작업이 시작됨. 여기에는 선발자의 오랜 경험과 어느 정도의 과감한 용기가 필요함.
 - 선발과정을 통과한 품종들은 7월말 경에 다시 토종 들장미에 속하는 카니나 장미와 접붙임을 함. 이 과정에서 당초 200,000개였던 품종이 5,000개로 줄어듬.
 - 약 3,000개의 절화장미 품종은 유리하우스에서 그 특성이 검사되고, 나머지 정원용 장미는 노지에서 시험됨.

- 특성검사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강인함, 향기, 색깔, 만개정도, 한파저항성 등인데, 최우선시 되는 특성은 사성균병에 대한 저항성임.
- 최고 8년까지 이어지는 검사를 통해 신품종 후보는 점점 줄어지고, 마지막에 선발되는 신품종은 4~5개가 됨.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신품종이 개발되지만, 개발된 품종이 성공적인지는 소비자들이 다시 판단함.
- 따라서 신품종이 “세계장미”가 되는데는 품종개발의 노력 이외에 다분히 어느 정도의 행운이 뒤따라야 하는 것임.

2. 품종별 로열티 수준

License fees

As far as no other agreements are existing, the licence fees for the following varieties of roses have been fixed by Kordes worldwide for the period from January 01, 2003 until December 31, 2003.

Tradename	Denomination	Colour	Licence fees Euro
Aalsmeer Gold	Bekola	golden yellow	0,80
Abracadabra	Korhocsel	red and yellow, extremely striped	0,85
Aloha	Kormarcus	yellow with reddish edge	0,85
Amadeus	Korsetag	velvet red	0,80
Amore	Kornijfla	deep red with yellow reverse	0,80
Angelika	Volki	rich pink	0,80
Aruba	Specawijk	bright red	0,80
Ballerina	Koremzila	soft-pink	0,85
Ballet	Korelzoda	strong pink	0,85
Black Beauty	Korfleur	black-red with yellow reverse	0,80
Bonanza	Korlidamo	orange-apricot	0,85
Bugatti	Korjafir	magenta pink	0,85
Cadillac	Korveril	pure pink	0,80
Calibra	Korcrisett	orange-red	0,80
Caramella	Korbretei	copper coloured	0,80
Carousel	Kormagoro	bicolour, cream-pink	0,85
Champagner	Korampa	cream-coloured	0,80
Cherry Girl	Korfirona	light pink	0,85
Cherry Lady	Kornafiro	cherry red	0,85
Chica	Kortachomet	clean soft-pink	0,80
Circus	Koriumara	intense yellow, glowing red on the petal tips of the flowers	0,85
Corvette	Korveco	bright orange-red	0,80
Cream Dream	Koromtar	cream coloured	0,80
Dallas	Korlimit	deep red	0,80
Dani	Korjan	orange-red	0,80
Dream	Kormiller	clean pastel pink	0,80
Duett	Kortraupfi	cream, pink traces	0,85
Ekstase	Korazerka	deep red	0,80
Eliza	Korlis	rich pink	0,80
Emely 2000	Korcapdra	cream-white	0,85
Escimo	Korcilmo	white	0,80
Esprit	Koresswik	pink	0,80
Esther	Korruicil	light pink	0,80
Europa	Kortexung	rich pink	0,80
Fantasia	Korprovia	cream with pink	0,85
Fidibus	Kordibus	cherry red and yellow, irregularly striped	0,85
Flirt	Korvondra	pure pink	0,80
Frisco	Korflapei	lemon yellow	0,80
Gabriella	Bergme	red	0,80
Golden Gate	Korrogilo	intense yellow	0,85
Golden Times	Kortime	golden yellow	0,80
Hocus Pocus	Korpocus	red and yellow, irregularly striped	0,85
Iceberg	Korturek	white	0,85
Innocencia	Korezaki	pure white	0,85
Jacaranda	Jacakor	magenta purple	0,80

Tradename	Denomination	Colour	Licence fees
			Euro
Jambo	Korvedasco	orange-red	0,85
Kardinal	Korlingo	bright cardinal red	0,80
Kiss	Korokis	salmon pink	0,80
La Luna	Koranul	light yellow	0,85
Lambada	Kordaba	bright salmon orange	0,80
Lemonade	Korunalike	lemon green	0,85
Lemon Dream	Koramvis	light yellow	0,80
Limbo	Kornalist	lime green	0,85
Limona	Korsuias	bud green-cream, bloom cream-yellow	0,80
Lollypop	Kordroper	salmon	0,85
Lulu	Korcalfier	red-white	0,85
Mariana	Korflanka	apricot-orange	0,85
Medeo	Korcremkis	magenta pink	0,80
Melody	Korbolak	salmon pink	0,80
Memory	Korfitase	magenta pink	0,85
Mercedes	Merko	orange-red	0,80
Mercedia	Korbravet	orange-red	0,85
Mercury	Korpadinro	orange-red	0,85
Metallina	Korweineu	metallic silver	0,85
Mona Lisa	Korcolla	light pink	0,80
Moonlight	Korligel	yellow	0,85
Myrna's Dream	Kordrekes	light apricot	0,80
Nicole	Korsir	cream-white with wine-red	0,80
Ohio	Spelamey	pastel pink	0,80
Pascha	Korsered	strong red	0,85
Patricia	Kordrarena	pink	0,85
Pepita	Korlauka	pastel pink	0,85
Peppermint	Kormantona	playful sand colour	0,85
Pink Tango	Taver	strong pink	0,80
Poetry	Korkitoeck	soft pink	0,85
Ponderosa	Kormobada	creme, yellow/pink	0,85
Red Corvette	Korhoco	deep red	0,80
Red Giant	Korislas	red	0,85
Red Star	Korbadared	medium red	0,85
Revue	Korolesola	white and pink	0,85
Rodeo	Spekra	carmine red with yellow reverse	0,80
Royal Dream	Kormeeram	pink	0,80
Roxy	Korrabca	red	0,85
Sacha	Spekes	medium-red	0,80
Safari	Korsalton	bronze-yellow	0,80
Sandra	Koreinck	old-rose	0,85
Sandrina	Korbronora	copper-yellow with red edges	0,80
Sioux	Koreistan	salmon pink	0,85
Smart	Korzentraf	salmon orange	0,85
Solette	Koramba	light yellow	0,80
Souvenir	Eurogroot	magenta pink	0,80
Spicy	Korblekaf	strong orange	0,85
Sunbeam	Korvenlig	copper yellow	0,85
Sunny Sky	Korvestavi	copper-yellow	0,80
Sunshine	Korhigego	intensive yellow	0,85
Sweet Honey	Korkularis	warm honey colour	0,85
Texas	Korbacol	yellow, red traces	0,80
Twin	Korduvo	green-white	0,85
Vanilla	Korplasina	vanilla coloured	0,80
Weisse Cadillac	Korcave	pure white	0,80